공촌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2026. 11

한국토지주택공사

목 차

제 1 장 사업의 개요 ····· 1

1.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 1

1.2 사업의 추진경위 ····· 2

1.3 주민 등의 의견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근거 ····· 3

1.4 사업의 내용 ····· 4

제 2 장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 6

2.1 주민 등 의견 수렴 개요 ····· 6

2.2 주민 등 의견수렴 및 반영 결과 ····· 14

2.3 공청회 개최여부 검토 ····· 45

2.4 공청회 개최 ····· 45

제1장 사업의 개요

1.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 청라국제도시의 상주인구 및 개발계획의 급격한 증가로 항공, 교통, 환경 등 기반인프라시설의 한계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공촌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증설을 통하여, 청라국제도시의 증가된 생활오수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공공 수역의 오염방지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1.2 환경영향평가 실시 근거

◦ 본 사업은「환경영향평가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관련 [별표 3]의【1. 도시의 개발사업】의 종류 중 "차.「하수도법」제2조 제9호 또는 제13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시설용량 : 100,000㎥/일이상]"으로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됨

<표 1-1>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구 분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협의 요청시기
1. 도시의 개발사업	차.「하수도법」제2조제9호 또는 제13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 중 처리능력이 1일 1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가)생략 나)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경우 : 「하수도법」제11조제3항에 또는 제4항에 따른 인가 전 다)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자가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는 경우 : 「하수도법」제16조제1항에 따른 허가 전 라)생략
본 사업	◦시설용량 : 105,000㎥/일(기존 65,000㎥/일, **증설 40,000㎥/일**)	

1.3 사업의 추진경위

가. 추진 경위

◦ 2024. 07. 26 : 환경영향평가용역 계약체결 및 착수

◦ 2025. 06. 12 : 협의회 구성·위촉 알림 및 심의요청(영종청라계획과-4086)

◦ 2025. 07. 24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완료(영종청라계획과-5236)

◦ 2025. 09. 17 ~ 10. 01 :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결정내용공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5-293호)

◦ 2026. 04. 30 ~ 06 .05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 공람·공고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6-1061호)

◦ 2026. 05. 14 : 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설명회 개최

◦ 2026. 08. 25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청회

나. 향후 계획

◦ 2026. 11.: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 2026. 12. : 환경영향평가서 제출 및 협의요청(예정)

1.3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반영 여부 공개 근거

◦ 주민 등의 의견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는「환경영향평가법」제25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서 실시함

<표 1-2> 주민 등의 의견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근거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3조
제25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①사업자는 제24조에 따라 결정된 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에 관하여는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다만, 주민에 대한 공고 및 공람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하여야 한다. ③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20일 이상 수렴하는 등 제2항의 절차에 준하여 수렴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본다. ④사업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⑤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경우(제14조에 따라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한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협의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18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2.제18조에 따른 협의 내용보다 사업규모가 30퍼센트 이상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 3.제18조에 따른 협의 내용보다 사업규모가 제22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최소 사업규모 이상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 4.폐기물소각시설, 폐기물매립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등 주민의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시설의 입지가 추가되지 아니한 경우 ⑥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방법과 제2항 단서에 따른 공고·공람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법 제2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요청 전에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승인기관장등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그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1.4 사업의 내용

가. 사업개요

◦ 사 업 명 : 공촌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 위　　치 : 인천광역시 서해구 청라동 1-559 일원

◦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 승인기관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 협의기관 : 한강유역환경청

◦ 사업규모

- 계획면적 : 111,035.2㎡(기존 77,160.2㎡, 증설 33,875㎡)

- 시설용량 : 105,000㎥/일(기존 65,000㎥/일, **증설 40,000㎥/일**)

◦ 사업비 : 1,210억원

◦ 증설계획

- 지상 : 운영공간 및 휴식·운동·녹지공간(테니스장, 생생마당, 이야기정원, 주차장 49면 등)

- 지하 : 하수처리공간(탈수기실, 탈취기실, 유량조정조, 전호기조, 분리막조 등)



<그림 1-1> 사업지구 위치도

제2장 주민 등 의견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2.1 주민 등 의견수렴 개요

◦ 「공촌 공공하수처리 증설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제39조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을 공고·공람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사업시행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에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을 제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음

가.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1) 평가서 초안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개요

(가) 공람공고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제2026-1061호

◦ 공고일: 2026년 4월 30일(목)

※ 신문공고: 아시아투데이(일간신문), 인천일보(지역신문)

(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 공람기간: 2026년 04월 30일(목) ~ 2026년 06월 05일(금)(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공람장소

-서해구청 환경관리과, 청라2동, 청라3동, 검암경서동, 오류왕길동 행정복지센터

(다) 주민설명회 개최

◦ 2026년 5월 14일(목) 13:00, 인천환경공단 공촌사업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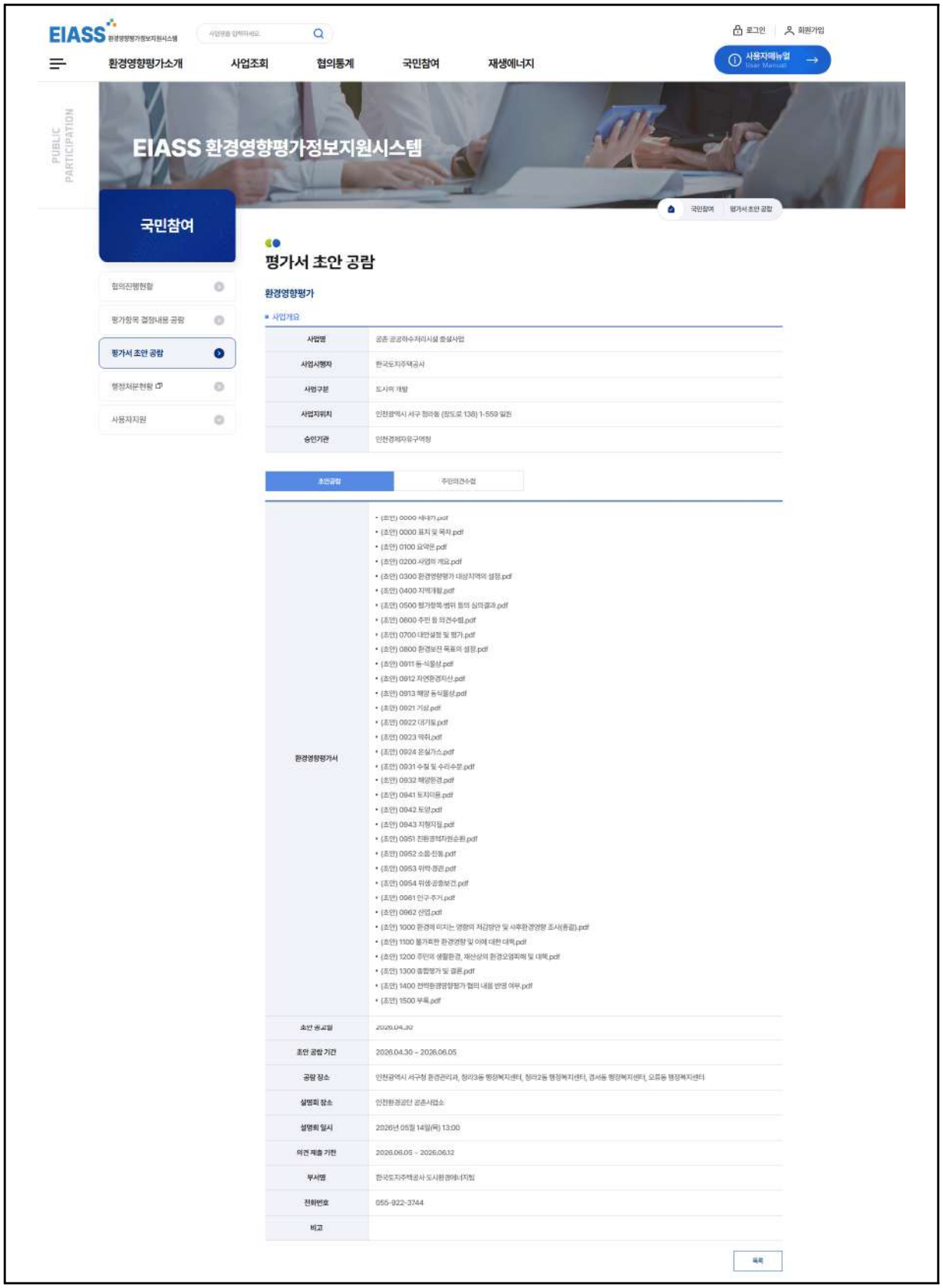
(라) 주민의견 제출

◦ 제출기한 : 공람완료 후 7일 이내(2026년 6월 12(금)일 까지)

◦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서 양식에 의거 서면 제출 또는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에 등록



<그림 2-1> 서해구청 홈페이지 공고내용



<그림 2-2>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홈페이지 공고내용

◦ 신문공고(일간신문)



10 WORLD 2026년 4월 30일(음력 3월14일) 목요일 아시아투데이

UAE發 '탈퇴 도미노' 우려… "사우디 중심 OPEC 존폐 위기"

<석유수출국기구>

FT "사우디 감산 정책에 막혀 갈등"
증산 원한 UAE, 중동전이 빌미줘
베네수·카자흐 등 향후 이탈 가능성

[워싱턴=하만주 특파원] 아랍에미리트(UAE)가 28일(현지시간) 1967년 가입 이후 약 60년 만에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OPEC+(OPEC과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 10개국 연대체)를 5월 1일부로 탈퇴한다고 국영 WAM 통신을 통해 공식 발표했다. OPEC 내 3위 산유국으로 그룹 전체 공급량의 약 12%를 담당하며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잉여 생산 능력 보유국으로 꼽히는 UAE가 탈퇴함에 따라 "OPEC이 창설 이후 직면한 최대의 존폐 위기"라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에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돼 국제 원유 시장이 역대급 공급 충격에 휩싸진 가운데 나온 이번 결정으로 산유 중식 이후 에너지 질서 재편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 UAE, 사우디와 10년 갈등 격화…증산 전략 vs 감산 정책 충돌

UAE는 5월 3일 예정된 8개 주요 OPEC+ 회원국 화상회의 일정을 앞두고 탈퇴를 전격 선언했다. UAE 정부는 성명에서 "탈퇴 이후에도 수요와 시장 여건에 맞게 점진적·신중한 방식으로 추가 생산량을 시장에 공급하겠다"며 "시장 안정에 계속 관여하고 생산국·소비국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아부다비국영석유회사(ADNOC)는 현재 480만 배럴을 하루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2027년까지 하루 500만 배럴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압둘자두에이 장관은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이번 결정은 UAE의 장기 전략·경제 비전에 근거한 주권적 국가 결정"이라며 "생산으로 얻을 시장 점유 부족이 오히려 탈퇴의 적기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 경제전문 매체 CNBC 방송에 "이번 결정은 그룹 내 형제·친구들과 부관하며 사우디의 OPEC 지도력에 최고의 존중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사우디와의 마찰설을 부인한 것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탈퇴가 "이란 전쟁을 명분으로 삼았지만, 실제로는 사우디와의 10년 갈등에서 시작된 미국 패권(체제)의 균열"이라고 분석했다.

사우디는 자국 재정 긍핍을 위해 배럴당 100달러(14만7,300원) 수준의 고유가를 유지하려 감산 중심의 쿼터 정책을 주도해 온 반면, UAE는 막대한 매장량을 조기에 현금화해 미래 산업에 투자하기 위해 증산 능력 확대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 왔다. 이 같은 이견이 공개적으로 폭발한 것은 2021년 7월 OPEC+ 회의로, 당시 UAE의 증산 요구에 사우디가 반발하면서 회의가 수일간 중단됐고, UAE가 결국 압박에 굴복하는 '굴욕'을 겪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FT는 UAE가 OPEC+에서도 함께 탈퇴한 것이 이란 전쟁에서 리시아가 이란을 지원한 것에 대한 UAE 정부의 불만을 반영한 다고 분석했다. AP통신은 미국 세일 혁명으로 미국의 하루 산유량이 1300만 배럴을 웃도는 수준으로 급증해 OPEC의 시장 영향력이 구조적으로 축소됐으며 이런 변화 속에서 UAE는 저유가를 감수하더라도 시장 점유율 확대를 우선시했다는 노선으로 기울었다고 전했다.

에너지 내전에서 사우디가 예민 정부군(PLC)을 지원하며 양국 갈등이 증폭됐고, 연초 군사 충돌 직전까지 긴장이 고조됐다는 점도 탈퇴의 배경이라고 NYT와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목했다.

◇ 걸프협력회의 분열 속 탈퇴 가속…트럼프엔 '정치적 승리'

이번 탈퇴의 직접적 촉매는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었다. WSJ에 따르면 이란은 걸프 이란국가 가운데 UAE에 가장 많은 2800기 이상의 드론·미사일을 퍼부었다. FT 집계로는 이 가운데 미사일 563발·드론 2256기가 UAE를 겨냥했다. 1000여 발의 미사일과 드론 916기의 공격을 받은 사우디의 3배에 육박하는 수치다.

블룸버그는 UAE가 유엔에 호르무즈 재개통 위한 투르사 등 승인을 추진했으나 추가 반대의 지지가 약했다는 데 UAE 정부의 불만이 쌓였다고 전했다. 안와르 가르가쉬 UAE 대통령 고문은 탈퇴 전날 "정치적·군사적으로 (GCC걸프협력회의에 의존한 대응은 역대 가장 약했다"고 비판했다.

로이터통신은 "UAE의 탈퇴는 2018년 유엔 총회에서 OPEC이 '유가를 올려 전 세계를 착취한다'고 비난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정치적 승리"라고 해석했다. 미국 컬럼비아대 글로벌에너지정책센터의 대니얼 스턴도프 선임연구원은 미국 인터뷰 매체 악시오스에 "UAE가 이번 전쟁에서 아랍 국가들보다 미국·이스라엘·프랑스를 더 믿을 수밖에 없는 동맹으로 확인한 상황에서 나온 결정"이라고 분석했다.

◇ UAE, 탈퇴 후 증산 확대 추진…추가 이탈 등 OPEC 약체화

단기적으로 국제 유가에 미치는 충격은 제한적이다. 호르무즈 봉쇄로 UAE의 해상 수출이 원상 시의 정한 수준으로 줄어든 데다 국제 브렌트유가 배럴당 111달러(16만3536원)로 전쟁 전보다 50% 이상 급등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UAE의 전쟁 전 하루 산유량은 약 360만 배럴로 OPEC 공식 쿼터인 34만 배럴을 이미 초과했으며, 이란 전쟁으로 3월 들어 생산이 약 40% 감소했다. UAE는 호르무즈를 우회하는 푸자이라항을 통한 육상 수출 확대를 추진 중이다. 영국 BBC 방송은 증산분을 제외하더라도 추가 파이프라인 능력이 더 필요하다고 전했다.

중장기 전망은 OPEC에 더욱 위협적이다. 블룸버그는 UAE의 결정이 증산 의욕을 가진다른 산유국들의 탈퇴로 이어질 수 있으며 베네수엘라와 카자흐스탄이 다음 후보로 거론된다고 보도했다. 카타르(2019년)·에콰도르(2020년)·앙골라(2024년)등 소규모 산유국들의 탈퇴와 달리 이번 UAE 탈퇴는 OPEC 전산 능력의 약 13%에 해당하는 핵심 회원국 이탈이라는 점에서 "질적으로 다른 차원"이라고 NYT·블룸버그는 평가했다. /hegel66

트럼프 "이란, 붕괴 상태… 핵 합의 선결 조건"

[워싱턴=하만주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이란이 '붕괴 상태'에 처해 있다고 돌보해 왔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SNS) 플랫폼 트루스소셜에 "그들은 지도부 상당 해결을 시도하면서 우리가 가능한 한 빨리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해 줄 것을 원하고 있다"고 적었다. 어떤 측이 어떤 경로로 이 메시지를 전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이란의 즉각적인 반응도 없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핵 문제를 모든 합의의 핵심 선결 조건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국가안보팀 회의에서 이란의 제안에 불만을 표명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파키스탄 중재자는 이란이 수일 내 수정된 제안을 제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CNN방송이 전했다.

한편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날 이란과 그림자 금융 시스템을 관리하며 제재 회피 및 테러 지원 혐의로 수백억 달러 규모의 자금 이동을 가능하게 한 35개 단체·개인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hegel66

공촌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공촌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30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1. 사업의 개요
○ 사 업 명 : 공촌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1-55일원 일원
○ 사업면적 : 111,035.2㎡(기존 77,165.2㎡, 증설 33,870㎡)
○ 사업내용 : 처리용량 증설(현행유지 105,000㎥/일 (기존 65,000㎥/일, 증설 40,000㎥/일))
○ 사 업 자 : 한국도시주택공사(LH)
2.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2026. 4. 30.(목) ~ 2026. 6. 5.(금)(20일 이상, 근무일 및 토요일 제외)
○ 공람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환경관리과, 청라2·3동, 경서동, 오류동 행정복지센터
3. 주민설명회 개최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26. 5. 14.(목) 13:00
○ 장 소 : 인천환경공단 공촌사업소
○ 주 관 : 한국도시주택공사(LH)
○ 내 용 :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설명
4. 의견제출 및 방법
○ 제출대상 : 대상지역의 주민 등
○ 제출기한 : 공람기간 종료 후 7일 이내(2026. 6. 12.(금)까지)
○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서식에 따라 제출 또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에 의견 등록
5. 기타사항
○ 환경영향평가서(초안)는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초안에 대한 요약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https://www.ifez.go.kr),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에 게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 사업 및 환경영향평가 관련 : 한국도시주택공사 도시기반처(☎ 055-922-3729) 이원이기공(계)(☎ 031-5183-5425)
- 기타 공모사항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원격개발과(☎ 032-453-7613)

메르세데스-벤츠 자발적 리콜 서비스 실시

S-Class, CLS, GLC, E-Class

C-Class

GLE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유)

<그림 2-3> 신문공고(아시아투데이)

◦ 신문공고(지역신문)



인천일보 제10471호 오피니언 2026년 4월 30일 목요일 19

시론

정부는 당당한 외교로 국익을 극대화해야

박범영 정치평론가·스포츠

도널드 트럼프가 촉발한 이란전쟁은 단순한 지역분쟁을 넘어 세계경제를 뒤흔드는 중대한 변수로 확대되고 있다. 이 전쟁은 더 이상 특정 국가 간 충돌에 머물지 않고, 에너지·물류·금융이 결합한 '세계 경제전쟁'의 성격을 띠고 있다. 명분 없는 전쟁은 국제질서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그 비용은 결국 각국의 민생경제로 전가된다. 이미 석유 가격 급등, 해상물류 차질,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가 동시에 나타나며 세계경제는 개태한 충격파로 들어가고 있다. 이처럼 격변하는 국제 환경 속에서 한국 외교의 방향은 더욱 명확해야 한다. 핵심은 단 하나, 국익 중심의 당당한 외교다.

지난 윤석열 정부의 대미·대일 외교는 적지 않은 논란을 낳았다. 한미동맹 강화라는 명분 아래 미국 중심 질서에 과도하게 편승하면서 외교적 자율성이 약화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대중 관계의 악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에서의 소극성 역시 국익 방어에 미흡했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대일 외교에서도 강제징용 해법을 둘러싼 일방적 양보 논란과 과거사 원칙 후퇴 지적이 이어졌다. 물론 정부는 안보 협력과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외교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국익을 균형과 협상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한계를 드러냈다.

이와 달리 이재명 정부의 외교는 더 실용적이고 균형적인 접근을 지향하고 있다.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하되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등실천을 소화하고, 다자외교에서 중견국의 역할을 강화하는 전략이다. 특히 외교를 경제와 직결시키는 경제안보 외교는 주목할 만하다. 반도체, 배터리, 에너지 등 국가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공급망 협력을 확대하며 협상력을 높이고 있다. 외교의 성과를 국민의 삶, 즉 일자리와 물가, 수출증가로 연결하려는 점에서 정책의 방향성 또한 분명하다.

이러한 정책 기조는 경제지표에서도 일정부분 확인된다. 2025년 6월 초 2700선에 머물렀던 코스피는 2026년 4월 현재 6400선을 넘어서는 수준까지 상승하며 시장의 기대를 반영하고 있다. 물론 주식시장의 상승이 모든 점책 성과를 설명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정책에 대한 신뢰와 미래 기대가 반영된 결과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외교와 경제가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이 수치로도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역사는 외교의 본질을 분명히 보여준다. 독일 통일을 완성한 비스마르크는 덴마크·오스트리아·프랑스와의 전쟁마다 상대를 외교적으로 고립시키고, 속전속결로 승리한 뒤 철제된 체제로 협력의 여지를 남겼으며, 통일 이후에는 세력균형과 동맹체제를 구축해 안정까지 완성했다. 이는 철저한 현실전략과 치밀한 외교 설계의 결과였다. 전쟁은 수단일 뿐 본질은 외교였으며, 핵심은 힘의 크기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배치하고 활용하느냐에 있었다.

오늘날 한국이 처한 국제 환경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이라는 4대 강국 사이에서 우리의 선택은 단순한 편 가르기가 아니라 전략적 균형이어야 한다. 어느 한쪽에 종속되는 외교로는 지속 가능한 국익을 확보할 수 없다. 당당함이란 무모한 대결이 아니라, 국익을 중심에 두고 주도적으로 협상하는 힘에서 비롯된다.

결국 외교는 감정이 아니라 계산이며, 명분이 아니라 결과로 평가받는다. 지금 한국 정부가 짊어져 할 일은 분명하다. 동맹은 강화하되 종속되지 않고, 협력은 확대하되 원칙을 지키며, 무엇보다 국익을 최우선에 두는 것이다. 비스마르크가 보여준 것처럼 외교는 설계하는 자의 것이다. 한국 정부가 당당한 외교를 통해 세계 속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내기를 기대한다.

썰물밀물 다카이치 총리가 더 세지고 있다

박상병 시사평론가

중동 전쟁이 벌써 두 달을 넘기고 있다. 협상은커녕 무산되는가 하면, 제안에 역제안이 오가면서 전쟁의 출구는 갈수록 꼬이고 있다. 양쪽 모두 더는 안 되겠다 싶어선지 호르무즈 해협과 페르로그램을 놓고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고 있다. 이란이 궁지로 몰리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특히 경제적인 어려움은 생각보다 더 심각해 보인다. 미국도 점점 고립되고 있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는 전쟁 이후가 더 걱정될 정도다. 네타냐후의 이스라엘은 세계적인 신뢰를 잃어버렸다. 광기에 사로잡힌 공을 잃어버렸다. 홀로코스트 피해국이어느새 그 가해국으로 변해졌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중동 전쟁으로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을 때 한 발 물러서 전열을 다듬는 나라도 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 중인 러시아는 크게 한 숨 돌렸다. 세계의 시선이 중동으로 쏠리는 사이, 러시아의 영향력은 몰라보게 달라졌다. 반면 미국과 바라보던 우크라이나의 입지만 난처하게 됐다. 러시아보다 더 세계질서에 민감한 중국은 새로운 기회를 잡은 듯하다. 미국이 고립되는 만큼 중국의 존재감은 더 커졌다. 실제로 세계 주요국 정상들이 앞다퉈 중국을 찾고 있다. 게다가 대만 공격의 명분도 없앴다. 이 틈에 일본의 군사 대국화 노선은 더 노골적이다. 지난 3월 중의원 선거에서의 압승이 최대동력이다.

지난주 다카이치 총리는 태평양전쟁 A급 전범 14명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에 공물을 봉납했다. 과거에는 직접 참배한 대표적인 인물이지만, 이번엔 공물로 대신했다. 일본 전진을 위한 이보 후퇴다. 당일 각료회의에서는 보라는 듯이 '방위장비품의 수출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도 수출하겠다는 것이다. 2014년 아베 정권이 엷어놓은 무기수출의 길을 전면화한 셈이다. 일본 유력 언론도 우려할 정도의 광화주의 노선 종언이며, '여자 이베'다운 극우 행보다. 이번 야스쿠니 공물과 삼상무가 수출은 한 묶음이다. 전후 평화주의 노선을 폐기하고, 본격적으로 '전쟁 가능한 국가'로 가겠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보인 것이다.

다카이치 정권의 극우 군국주의 노선은 이미 예상했던 일이다. 앞으로 평화헌법도 바꿀 것이다. 그리고 대중국 강경노선은 더 격화될 것이다. 중동 전쟁 이후 세계 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동아시아 정세도 매우 불안정할 것이다. 미중 패권이 충돌하는 최전선에 남북이 자리 잡고 있지만, 최근의 대만 분쟁은 더 심각해 보인다. 중국이 결심만 한다면 대만 공격은 시간 문제다. 이럴 경우 미국은 일본을 앞세워 개입할 것이다. 어쩌면 주한미군도 투입될 것이다. 그럴 때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강력한 방위력을 구축하되, 어느 쪽이든 끌려가는 것은 금물이다. 이런 우리 운명은 우리가 결정토록 차근차근 준비해야 한다.

[사설]

열차 납품 지연, '시민 발' 묶여서는 안 된다

인천지하철 1호선 검단 연장선과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선의 열차 도입 사업이 베란 끝에 들렸다. 인천시가 열차 제작 계약을 맺은 다원시스가 경영난으로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차량 납품 지연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계약을 해제하고 다른 업체와 계약을 하려고 해도 계약의 손해배상을 해결할 수 없다는 법리적 관단이 있어 전혀 손을 쓰지 못한다는 점이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으로 돌아오게 생겼다.

계약대로라면 다원시스는 지난해까지 인천1 호선 검단 연장선에 8칸 열차 1대를 납품하고 내년까지 서울7호선 청라 연장선에 8칸 열차 2대를 납품해야 한다. 계약 규모만 977억원이다. 인천시는 당초 납품 지연을 우려해 계약 해제를 검토했다. 그러나 이미 투입된 차량 제작 비용에 대한 배불 비용 청구 가능성과 지방계약법상 해제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법리적 자문이 나와 계약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결국, 제작시가 회생할 때까지 기다리거나 국토교통부에 표차 간소화를 건의하는 것 외엔 뾰족한 수가 없는 처지다.

다원시스의 회생 기획안이 나오는 9월까지 인천시는 허공만 쳐다보게 되었다. 물론 회생안이 나오더라도 다원시스가 정상화 된다는 보장도 없다. 철도 차량은 입품부터 투입까지 통상 4~5년이 걸린다. 이미 관·숙원도공사 등 전국 곳곳에서 납품 지연을 일으키고 있는 업체의 상황을 고려하면, 검단과 청라 연장선의 개통 초기 혼잡도 가중과 배차 간격 불규칙 문제는 피하기 어려운 현실이 됐다.

인천시는 이제라도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해야 한다. 다원시스에 일일 공정 보고를 받는 수준을 넘어, 국토부 및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대체 차량 투입 가능성이나 계약 이행을 강제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 법리에 갇혀 시민의 발이 묶이는 것을 방관한다면 그것은 행정의 직무유기다. 시민들의 발이 묶이는 일이 없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때다. 정부 또한 이번 기회에 철도 차량 발주 시스템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에 나서야 한다.

삼성의 영업이익, 사회 전체의 혁신으로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5월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삼고 상한제를 폐지하자는 요구를 내세우고 있으며, 사측은 경제적 부가가치(EVA) 기반 성과급 제도를 유지하되 임금 인상과 특별성과급 지급을 제안하고 있다. 성과급 배분 비율이나 연봉 인상률은 본질적으로 노사 자율의 협상 영역이다. 그러나 영업이익의 배분이 단지 노사 간의 몫 나누기 문제로 축소되는 것은 매우 아쉽다.

삼성의 영업이익은 삼성전자 성과가 아니다. 국가의 산업 정책, 사회적 인프라, 수많은 협력업체와 노동자의 기여가 결합된 결과다. 반도체 산업은 국가 전략산업으로 지정되어 세제 혜택과 연구개발 지원을 받아왔고, 유기 때마다 금융권과 정부의 구조조정 점책이 삼성의 회생을 도왔다. 그렇다면 성과급 논의는 단순한 분배 비율을 넘어, 이익을 어떻게 활용해 삼성의 혁신력을 높이고 국가 전체의 혁신 구조를 고도화하며, 협력업체와 그들의 노동자까지 세심하게 배려할 것인가로 확장되어야 한다.

영업이익의 3분의 1은 삼성 자체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는 데 투자해야 한다. 반도체,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등 미래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과 인재 양성이 필수적이다. 또 다른 3분의 1은 국가 전체의 혁신 구조를 고도화하는 사회적 투자로 이어져야 한다. 대학·연구기관과의 협력, 중소기업 지원, 산업 생태계 강화에 쓰여야 한다. 마지막 3분의 1은 분배에 활용하되, 단순히 임직원만이 아니라 오늘날의 성장을 가능케 한 협력업체와 하청·비정규직 노동자까지 배려해야 한다.

규형 잡힌 영업이익 활용은 삼성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글로벌 초일류 기업으로서의 의상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다. 노사 협상은 당장의 성과급 비율이나 임금인상률을 둘러싼 갈등을 넘어, 삼성의 이익을 사회 전체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연결하는 더 큰 그림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삼성이 선두에서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한 차원 더 끌어올리는 길이다. 노사 모두의 넓고 깊은 안목을 기대한다.

대곡역 롯데캐슬 블루리버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청주자 모집공고문 (2026.04.30.)
LH 경기북부지역본부

분 묘 개 장 공 고(1차)
LH 한국토지주택공사 평택사업본부장

공촌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2026년 4월 30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그림 2-4> 신문공고(인천일보)

(2) 주민설명회 개최 알림



청라3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청라2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오류왕길동(오류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검암경서동(경서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인천체육고등학교 인근

<그림 2-5> 주민설명회 개최 알림 현수막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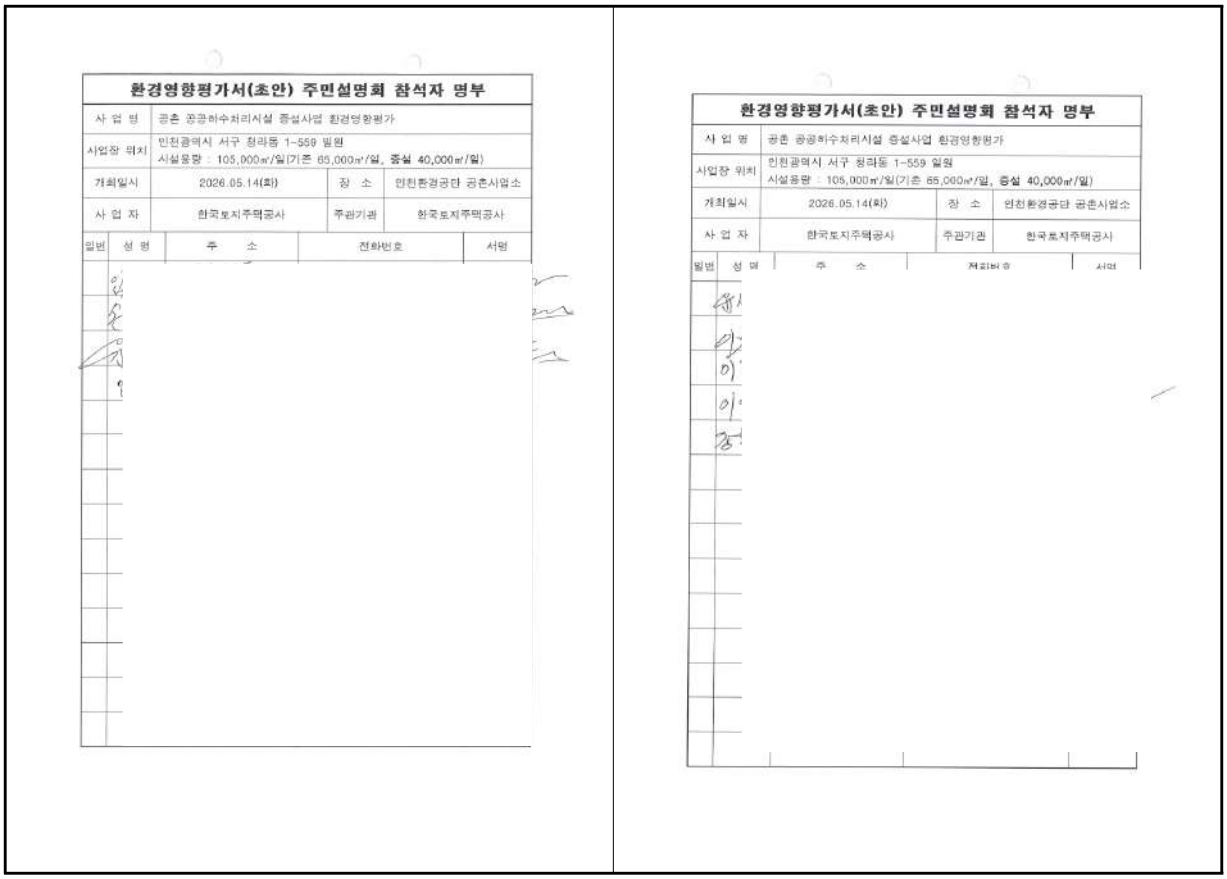
(3) 주민설명회 개최결과

<표 2-1> 주민설명회 개최결과

구 분	일 시	장 소	참석자
주민설명회	2026. 05. 14(목) 13:00	인천환경공단 공촌사업소	9명



<그림 2-6> 주민설명회 개최 사진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설명회 참석자 명부

사 업 명	공촌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환경영향평가		
사업장 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1-559 일원 시설용량 : 105,000㎥/일(기존 65,000㎥/일, 증설 40,000㎥/일)		
개최일시	2026.05.14(화)	장 소	인천환경공단 공촌사업소
사 업 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관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일번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서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설명회 참석자 명부

사 업 명	공촌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환경영향평가		
사업장 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1-559 일원 시설용량 : 105,000㎥/일(기존 65,000㎥/일, 증설 40,000㎥/일)		
개최일시	2026.05.14(화)	장 소	인천환경공단 공촌사업소
사 업 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관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일번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서명

<그림 2-7> 주민설명회 참석자 명부

2.2 초안에 대한 의견 반영여부

◦ 공람의견,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시 진술 또는 통보한 의견 등을 최종적으로 검토 및 수정하여 금회 초안에 대한 의견의 조치계획을 작성하였음

가. 협의기관(한강유역환경청)

<표 2-2> 협의기관(한강유역환경청) 반영여부

검토의견	조치계획(안)
▪ 한강유역환경청(협의기관)	
Ⅰ. 총 괄	
◦ 본 의견은 '공촌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환경영향평가서(본안) 작성 시 반영하여야 함. - 본 의견의 반영이 불가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와 근거 제시	◦ 검토의견을 평가서(본안) 작성 시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반영이 불가한 경우 구체적 사유와 근거를 제시하도록 하겠음
◦ 「환경영향평가법」 제5조 규정에 따라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검토·제시하여야 함.	◦ 규정에 따라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하여,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검토·제시하도록 하겠음
◦ 동 사업 시행으로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 피해 등 민원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한 소통을 통하여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민원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한 소통을 통하여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강구하여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음
Ⅱ. 항목별 검토의견	
1. 자연생태환경 분야	
◦ 현지조사 시 발견된 법정보호종 맹꽁이에 대한 대체 서식지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사업부지 내 조성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검토하고 관련 협의내용을 제시하여야 하며, - 불가능한 경우 후보지 2개소에 대한 개체 수용 가능성, 향후 개발 압력, 서식지 관리주체 및 추가적인 보전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반영] ◦ 금회 사업부지가 환경영향평가 및 인·허가 진행이 완료된 청라지구 내에 위치함에 따라, 청라지구사업을 통하여 포획·방사 허가증을 받아 맹꽁이 포획·이주를 진행하고 있음 - 허가번호 제ES202608ECP00015호(한강유역환경청) 허가기간 2026.09.03.~2026.10.31.
◦ 사업지구 인근에서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검은머리물떼새, 저어새 등 바닷새가 조사되었으므로, 공사로 인해 바닷새의 서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저감방안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반영] ◦ 공사로 인해 바닷새의 서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저감방안을 수립·제시 하도록 하겠음
◦ 공원 및 체육시설 등에 대한 야간 운영계획 등을 검토하여 야간 조명 설치 시에는 빛공해 영향 등을 면밀히 예측하여 저감방안(심야소등, 조명갓 설치 등)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반영] ◦ 빛공해 영향 등을 면밀히 예측하여 저감방안(심야소등, 조명갓 설치 등)을 수립·제시 하도록 하겠음 ◦ 공원 및 체육시설은 하수처리시설 운영여건을 고려하여 야간에 미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태양광 블록 및 보안등 등은 심야소등하도록 하겠음.

(표 계속)

검토의견	조치계획(안)
▪ 한강유역환경청(협의기관)	
2. 대기환경분야	
1) 대기질	
◦ 사업지구 북동측에 인접한 자동기상관측망(경서동) 자료를 이용하여 풍향별 풍속등급 빈도분포도(바람장미도)를 제시하고, - 자동기상관측망(경서동)의 관측항목(풍향, 풍속, 강수량 등)을 인천기상대 자료와 통합하여 기상입력자료로 적용, 확산영향 예측 및 입·출력문을 제시하여야 함.	[반영] ◦ 평가서(본안) 작성시 경서동 자료를 제시하겠으며, 인천기상대 자료와 통합하여 기상입력 자료로 적용, 확산영향 예측 및 입·출력문을 제시하도록 하겠음
◦ 토공기간은 작업중단 일수(주말, 공휴일, 우천 등)를 고려한 실제 토공기간을 반영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및 확산영향 예측을 실시하여야 함.	[반영] ◦ 실제 토공기간을 반영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및 확산영향 예측을 진행하겠음
◦ 운영 시 배출량 산정, 영향예측, 저감대책 등 대기질 항목의 전반적인 평가를 실시설계 후 시행하는 것으로 제시하였으므로, - 추후 평가서(본안) 제출 시 연료사용계획, 교통량 등을 고려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산정, 영향예측, 저감대책을 마련·제시하여야 함.	[반영] ◦ 평가서(본안) 작성 시 연료사용계획 등을 고려하여 운영시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을 제시하도록 하겠음
◦ 사업지구 남측으로 교육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공사 시 대기질 영향이 예상되므로, 방지망 설치, 집중 살수구간 선정, 공사차량 이동경로 관리 등을 저감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반영] ◦ 평가서(본안) 작성시 공사 시 대기질 저감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음
2) 악취	
◦ 악취의 경우, 악취물질간의 복합적인 작용에 의해 취기강도가 강해질 수 있어 보수적인 영향예측이 필요하므로, 아래사항을 고려한 배출량 산정 및 영향예측결과를 제시하여야 함 - 전체 시설용량(기존시설 포함)에 대한 배출계수를 적용 - 배출량 산정 시 문헌자료를 인용한 배출계수를 적용하였으나, 현재 운영 중인 시설의 자가측정 자료, 탈취시설 저감효율을 고려한 설계농도 값 등을 병행 적용하여 악취물질 배출량 산정 - AERMOD 적용 시 점오염원으로 적용하되, 탈취시설의 배출구의 제원(직경, 높이 등)을 고려하여 예측결과 제시 - 복합악취 및 지정악취물질에 대한 배출량 산정 시 탈취시설의 저감효율을 95%로 일괄 적용하고 근거는 미제시하였으므로, ·저감효율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명확한 근거 및 설계농도 값을 고려한 합리적인 저감효율 적용하여 배출량 산정 및 영향예측 재실시	[반영] ◦ 검토의견에서 제시한 사항 등을 반영하여 보수적 예측을 진행하여 평가서(본안)에 제시하도록 하겠음

(표 계속)

검토의견	조치계획(안)
▪ 한강유역환경청(협의기관)	
2) 악취	
◦ 계획지구 주변 산업단지, 소각시설 등 다수의 악취 배출시설이 운영 중이며 교육시설 등이 인접하고 있으므로, 악취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저감대책을 마련·제시하여야 함. - 탈취시설에 대한 공정흐름도를 포함한 구체적인 운영계획 작성 - 선정된 탈취시설의 처리효율은 물질별, 중농도·고농도 구분 제시 - 배출시설 풍량산정결과 및 방지시설 용량을 검토하여 오염물질 적정처리 가능여부를 제시하여야 함. - 시설보수·점검 등 미운전 시, 비정상·비상운전 시 악취저감방안 제시 - 1~3단 약액세정 방지시설의 유지관리계획(세정수 교환, 충전물 교체 등) 제시 - 하수처리시설 대한 시설별(전처리설비, 탈수기실 등) 지하화 및 밀폐화 계획을 구체적인 도면 등을 통해 제시	[반영] ◦ 검토의견에 제시한 사항 등을 반영하여 악취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저감대책을 마련하여 제시하도록 하겠음
◦ 부지경계 및 인접한 영향예상 시설을 대상으로 복합악취를 포함한 악취물질의 관리기준을 설정하고, 초과 시 대응방안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과 연계하여 구체적으로 수립·제시하여야 함.	[반영] ◦ 부지경계 및 인접한 영향예상 시설을 대상으로 복합악취를 포함한 악취물질의 관리기준을 설정하고, 초과 시 대응방안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과 연계하여 구체적으로 수립·제시하도록 하겠음
◦ 사업지구 주변 교육시설 등이 인접하므로, 악취 관련 민원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함. - 악취방지시설 밀폐여부 확인, 방지시설 운영 현황 점검, 비정상 가동 여부 확인 등 실제 운영 시 악취영향을 개선할 수 있는 대응방안 마련·제시	[반영] ◦ 악취관련 민원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제시하도록 하겠음
3) 온실가스	
◦ 온실가스 감축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지침에 따라 현황조사 및 공사·운영시 배출량 산정 등 아래사항을 검토·제시하여야 함. - 현재 운영 중인 공촌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온실가스 배출시설과 에너지 이용시설 현황조사 및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을 토대로 사업지구 내 토지·수목 부문 온실가스 저장·흡수량 산정 - 공사·운영 시 폐기물 부문과 간접 및 직접배출원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 토지이용 변화에 대한 온실가스 저장·흡수 변화량 및 계획 시행 전·후 비교표 제시 - 온실가스 배출량 및 저감량 산정·비교표 제시 - 저감방안 및 감축목표가 해당 지자체의 온실가스 관련 정책 부합여부 검토·제시	[반영] ◦ 검토의견에서 제시한 사항 등을 검토하여 평가서(본안)에 제시하도록 하겠음

(표 계속)

검토의견	조치계획(안)
▪ 한강유역환경청(협의기관)	
4)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대기환경분야)	
◦ 대기 중으로 확산되는 오염물질은 기상상황 및 계절적 영향이 크므로 관련 지침*에 따라 사후환경영향조사 주기를 강화하여야 함. - 일반대기오염물질, 악취물질의 경우 분기 1회 3일 이상, 악취영향이 크게 발생하는 시간대를 고려하여 최소 4시간 간격으로 2회 이상 조사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25-49호)	[반영] ◦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도록 하겠음
◦ 공사 시 주요 물질(PM-10 등)의 유지목표기준을 설정하고 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반영] ◦ 공사 시 주요 물질(PM-10 등)의 유지목표기준을 설정 및 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도록 하겠음
◦ 악취물질 모니터링 지점을 주변 정온시설로 설정하였으나, 방지시설 적정 운영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배출구를 추가하여 모니터링 하여야 함.	[반영] ◦ 평가서(초안) 지점 외에 검토의견에서 제시한 의견(배출구 등)을 추가하여 계획 수립·제시하도록 하겠음
2. 수환경 분야	
1) 수질	
◦ 동 사업은 지하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어 이에 따른 지하수위 저하 등의 영향이 예상되므로, 지하수위 및 수질 등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유출지하수 활용계획 포함)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반영] ◦ 지하수위 및 수질 등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유출지하수 활용계획 포함)을 수립·제시하도록 하겠음
◦ 침사지 준설토를 자연건조 후 성토재 등으로 활용할 계획을 제시하였으나,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재활용 가능여부 확인과 관련 계획(재활용 전 사전 분석·확인 등)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반영] ◦ 준설토 재활용 가능여부 확인과 관련 계획(재활용 전 사전 분석·확인 등)을 수립·제시 하도록 하겠음
◦ 사업부지 상부에 운영공간 및 휴식·운동·녹지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므로, 해당 시설 운영 시 필요한 용수사용량 및 오수발생량을 예측하고, 공급 및 처리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반영] ◦ 운영 시 필요한 용수사용량 및 오수발생량을 예측하고, 공급 및 처리계획을 제시하도록 하겠음
2) 해양환경	
◦ 해양수질 조사결과, CNP* 분석값이 높으므로, 인근 지점을 2개 이상 추가 조사하고, 문헌자료는 인근 해역의 해양환경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계절별 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 평가서(초안) 511쪽 : COD 11.0mg/L, T-N 5.25mg/L, T-P 0.470mg/L - 하수처리시설 증설 이후 운영 시 전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보다 강화된 방류수질 설정을 검토하고, 방류구 위치도면을 제시하여야 함.	[반영] ◦ 평가서(본안) 작성 시 인근 2개 지점을 추가 조사하도록 하겠으며, 문헌자료의 경우 계절별 자료를 제시하도록 하겠음 - 강화된 방류수질 설정 검토 및 방류구 위치도면 제시

(표 계속)

검토의견	조치계획(안)
▪ 한강유역환경청(협의기관)	
4. 사회·경제환경 분야	
1) 인구·주거	
◦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로 지역주민 우려가 예상되므로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하여 아래 사항을 토대로 민원 예방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기존 운영중인 시설에 대한 민원내역 조사 및 해결방안 제시 - 주민이 사업자에게 직접 민원을 접수하는 창구 개설 - 민원 접수-처리-결과 공지 단계별 대응 방안 수립 - 민원처리결과 공지,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공개 등 적극적 소통 방안 마련 등	[반영] ◦ 검토의견에서 제시한 사항을 토대로 민원 예방 대책을 마련하여 제시하도록 하겠음
Ⅲ. 기타	
◦ 환경영향평가서(본안)에는 본 검토의견과 관계 행정기관 및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를 종합하여 내용 및 반영 여부를 요약 제시하고, 반영된 의견은 해당 항목에 작성·제시하여야 함 - 본 의견보다 완화된 보전대책을 수립하거나 의견 간 상충 등의 사유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에는 미반영 사유와 함께 대안 제시	◦ 평가서(본안) 작성 시 검토의견과 관계 행정기관 및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를 종합하여 내용 및 반영 여부를 요약 제시하겠으며, 반영된 의견은 해당 항목에 작성·제시하도록 하겠음 -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경우에 미반영 사유와 대안을 함께 제시하도록 하겠음
◦ 환경현황 조사내용, 환경영향예측결과 및 저감대책 등은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최대한 정량화하여야 함 - 현황조사 시 조사자 인적사항 및 조사자 의견을 첨부 제시하고 장래 환경영향예측 시(예측조건, 적용방법, 예측 시 사용계획, 수치 등) 적용 및 산정 근거를 명확히 제시	◦ 환경현황 조사내용, 환경영향예측결과 및 저감대책 등은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최대한 정량화하여 제시하도록 하겠음
◦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대행에 따른 분리계약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 원도급 및 하도급률 검토서 등을 부록에 제시하여야 함	◦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대행에 따른 분리계약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 원도급 및 하도급률 검토서 등을 부록에 제시하도록 하겠음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에 따라 부록내용을 상세히 제시하는 등 충실히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 끝.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에 따라 부록내용을 상세히 제시하는 등 충실히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음

나. 관계 행정기관

(1) 인천경제자유구역청(승인기관)

<표 2-3> 관계 행정기관(인천경제자유구역청) 검토의견 및 반영여부

검토의견	조치계획(안)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승인기관)	
Ⅰ. 총괄(공통) 의견	
◦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 방안은 공촌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증설사업에 따른 환경상 악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사업 시행 시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함	◦ 사후환경영향조사시 평가서(초안, 본안)에 제시된 저감방안을 사업 시행시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도록 하겠음
◦ 협의내용과 관련하여 다른 관계 법령 등에 의한 인허가·신고·협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협의내용과 관련하여 다른 관계 법령 등에 의한 인허가·신고·협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음
◦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민원을 해결하여야 함	◦ 발생된 민원에 대하여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음
◦ 본 사업의 공사 및 운영 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주변 환경에 대한 추가적인 영향이 발생하거나 예측될 경우 즉각적으로 별도의 저감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하여야 함	◦ 본 사업의 공사 및 운영 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주변 환경에 대한 추가적인 영향이 발생하거나 예측될 경우 즉각적으로 별도의 저감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음
Ⅱ. 항목별 검토의견	
1. 자연생태환경 분야	
◦ 사업지구 내에서 확인된 법정보호종 맹꽁이에 대해서는 대체서식지의 수용 가능성을 사전에 조사하여 이주계획 및 관리 주체의 명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등 구체적인 관리·운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반영] ◦ 금회 사업부지가 환경영향평가 및 인·허가 진행이 완료된 청라지구 내에 위치함에 따라, 청라지구사업을 통하여 포획·방사 허가증을 받아 맹꽁이 포획·이주를 진행하고 있음 - 허가번호 제ES202608ECP00015호(한강유역환경청) 허가기간 2026.09.03.~2026.10.31.
2. 대기환경 분야	
◦ 사업지구 인근에 인천체육고등학교, 청라국제도시 아이파크, 청라달튼외국인학교 등 정온시설이 분포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공사 및 운영시에 악취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영향 저감방안(민원방지 및 민원 해소방안 포함)을 수립·이행하여야 함	[반영] ◦ 평가서에서 제시한 지하화, 악취저감시설 설치 등의 수립·이행될 수 있도록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통하여 관리토록 하겠음
3. 수환경 분야	
◦ 사업지구에 공촌천이 인접함에 따라 강우시 토사유출 및 지하수 오염, 비점오염원 등 저감을 위한 구체적인 수질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반영] ◦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통하여 정기적인 수질 모니터링을 진행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진행되도록 관리하겠음

(2) 인천광역시(관할 시)

<표 2-4> 관계 행정기관(인천광역시) 검토의견 및 반영여부

검토의견	조치계획(안)
▪ 인천광역시(관할 시)	
Ⅰ. 총괄(공통) 의견	
◦ 본 사업은 청라국제도시의 상주인구 및 개발계획의 급격한 증가로 항공, 교통, 환경 등 기반인프라시설의 한계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으로 공촌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증설을 통하여 생활오수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추진 하는 사항으로서 항목별 협의내용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저감방안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 하여야 하며, 주민 의견 및 관계 기관 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반영한 구체적인 내용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항목별 협의내용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저감방안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으며 ◦ 주민 의견 및 관계 기관 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반영한 구체적인 내용을 명확히 제시하도록 하겠음
◦ 사업지구 인근 인천체육고등학교, 청라의료복합타운, 스타필드 등이 인접해 있어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악취에 대한 관리 대책 필요 - 배출구 없는 악취방지시설 적용(포집가스 탈취 후 포기용 공기로 공급)하는 방안 검토 필요	[미반영] ◦ 탈취기 고장 및 유지보수시 등 미처리된 악취가 생물반응조로 유입될 경우 황화수소, 암모니아, VOCs 등이 미생물에 독성으로 작용되어 활성 저하 및 사멸이 우려되며, 탈취기에서 배출되는 포집 악취에 포함된 습기, 잔여 악취물질(황화수소 등)로 인해 공기여과기, 송풍기, 산기장치 등 관련 설비의 부식 등 발생 예상됨 ◦ 따라서, 잦은 유지관리 및 기자재 내구연수 감소 등 정상적인 설비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기존 운영시설의 환기구가 인천체육고등학교 방향으로 설치되어 있어 민원이 발생되고 있음. 방향 변경 등 대책 강구 필요	◦ 본 사업은 기존 하수처리시설 부지 내 증설사업으로 기존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시설개선은 사업범위에 미 해당됨. - 공촌하수처리시설 인가일(1999.06.30.), 가동게시일(2012.07.11.) - 인천체육고등학교 이전일(2012.08.24.)
◦ 본 사업의 공사 및 운영 시 환경영향평가 검토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환경영향, 예측의 부적정 등으로 주변 환경에 악영향이 발생하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사전에 이에 대한 원인분석을 실시하고 본 협의내용 외 별도의 추가대책을 신속히 강구·시행하여 환경관련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함.	◦ 공사 및 운영 시 환경영향평가 검토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환경영향, 예측의 부적정 등으로 주변 환경에 악영향이 발생하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사전에 이에 대한 원인분석을 실시하고 본 협의내용 외 별도의 추가대책을 신속히 강구·시행하여 환경관련 피해를 사전에 방지토록 하겠음
Ⅱ. 항목별 검토의견	
1. 동·식물상 분야	
◦ 사업지구는 청라·굴포천하구 겨울철새도래지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사업지구 내외에서 법정보호종 및 조류 서식·이동 가능성이 확인되는 바, 공사시 소음·진동, 비산먼지, 야간조명, 토사유출 등에 의한 조류 및 양서류 서식환경 교란 가능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반영] ◦ 평가서(본안) 작성 시 추가조사 또는 문헌조사 등을 통하여 조류 및 양서류 서식환경 교란 가능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 하여 제시토록 하겠음
◦ 맹꽁이에 대하여 정밀조사 수행 후 이주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으나, 법종보호종의 단순 출현 여부 확인만으로는 사업영향을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공사 착수 전 산란지, 은신저, 월동지, 이동경로, 주변 수로 습지와의 연결성을 포함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도면화하여 보전·회피·저감·이주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반영] ◦ 금회 사업부지가 환경영향평가 및 인·허가 진행이 완료된 청라지구 내에 위치함에 따라, 청라지구사업을 통하여 포획·방사 허가증을 받아 맹꽁이 포획·이주를 진행하고 있음 - 허가번호 제ES202608ECP00015호(한강유역환경청) 허가기간 2026.09.03.~2026.10.31.

(표 계속)

검토의견	조치계획(안)
▪ 인천광역시(관할 시)	
Ⅱ. 항목별 검토의견	
1. 동·식물상 분야	
◦ 동식물상 조사는 최소 4계절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양서류는 산란기 및 강우 직후, 조류는 월동기 및 이동시기, 육상생물은 갈수기 풍수기 특성을 반영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조사결과에 따라 공사시기 조정, 야간공사 제한, 저소음, 저진동 장비 적용, 임시 차폐시설 설치, 생태 측구 및 소형동물 탈출시설 설치 등의 저감방안을 보완하여야 함.	[부분 반영] ◦ 2월, 5월, 8월에 동·식물상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사업 공정상 4계절 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따라 계절별 조사는 진행하지 못하였으나, 계절별 영향을 많이 받는 곤충, 양서류, 조류의 조사를 진행 한바, 추가적인 문헌조사 등의 자료 추가를 통하여, 평가서(본안) 작성 시 생태 측구 및 소형동물 탈출시설 설치 등의 저감방안 등을 검토하여 보완토록 하겠음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은 공사시 및 운영시로 구분하여 법정보호종 출현여부, 서식처변화, 조류이용현황, 생태계교란식물 유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사주기와 조사지점을 확대하여야 하며, 특히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시 공사 중지, 전문가 자문, 포획·이주 대체서식지 관리, 사후 모니터링으로 이어지는 현장 대응절차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반영] ◦ 금회 사업부지가 환경영향평가 및 인·허가 진행이 완료된 청라지구 내에 위치함에 따라, 청라지구사업을 통하여 포획·방사 허가증을 받아 맹꽁이 포획·이주를 진행하고 있음 - 허가번호 제ES202608ECP00015호(한강유역환경청) 허가기간 2026.09.03.~2026.10.31.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은 공촌천, 청라 굴포천 하구 철새도래지, 인근 해양환경과 연계되는 생태적 전이지역에 해당하므로,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영향은 단순한 이격거리 중심의 검토가 아니라 철새도래지 기능, 공촌천 수변부, 녹지축, 수생태계 연결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반영] ◦ 철새도래지 기능, 공촌천 수변부, 녹지축, 수생태계 연결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평가서(본안)을 작성토록 하겠음
2. 대기환경분야	
◦ 본 사업은 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지하화, 환기 탈취시설 운영되는 사업으로 악취 학산 및 대기질 예측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천기상대 등 종관기상자료 외에 사업지구 인근 AWS(자동기상관측장비)자료, 해안 인접지역의 풍향 풍속 특성, 계절별 대기정체 조건을 추가로 검토하여야 함.	[반영] ◦ 사업지구 인근 AWS(자동기상관측장비)자료, 해안 인접지역의 풍향 풍속 특성, 계절별 대기정체 조건을 추가로 검토하여 평가서(본안)을 작성토록 하겠음
◦ 악취 및 대기질 영향 예측 시 연평균 기상조건만을 적용할 경우 주민 체감영향이 과소평가 될 수 있으므로, 여름철 고온 정체 조건, 겨울철 북서풍, 야간 안정층 형성 시나리오 등 불리한 조건을 포함하여 예측결과를 보완하여야 함.	[부분 반영] ◦ 불리한 조건(계절적, 바람영향) 등을 포함하여 검토 후 예측결과를 보완하도록 하겠음
◦ 사업지구 주변 인천체육고등학교 등 민감 수용체가 위치하고 있으므로 대기질 조사지점은 사업지구 경계, 학교, 주거 업무시설, 공촌천 주변을 포함하여 확대하여야 함.	[반영] ◦ 대기질의 경우 사업지구 2km내의 정온시설(학교, 주거지역)을 선정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있음

(표 계속)

검토의견	조치계획(안)
▪ 인천광역시(관할 시)	
Ⅱ. 항목별 검토의견	
2. 대기환경분야	
◦ 대기질 현황조사는 최소 4계절, 계절별 7일이상, 매시간별 측정을 원칙으로 보완하고, 기존측정 자료와 현지조사 결과를 비교하여 현황농도의 대표성을 검증하여야 함.	[부분 반영] ◦ 대기질 현황조사의 경우 4계절 24시간 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이를 토대로 현황농도의 대표성을 검증토록 하겠음
◦ 운영시 악취가 핵심 생활환경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탈수기실, 찌꺼기저류소, 유압유량계실, 약품하역시설, 반출실, 유지관리 공간 등 주요 악취 발생가능 시설별 악취포집 이송, 탈취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특히 증설사업(40,000㎥/일)에 대한 단일 사업 검토가 아닌 증설 이후 전체 시설용량(105,000㎥/일)에 대한 사업으로 기존시설에서 악취를 유발하는 공정(시설)에 대한 지하화 방안이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함. - 누적환경영향평가의 관점에서의 항목별 영향 예측, 저감방안 제시 필요 - 안양시공공하수처리시설(박달하수처리장) 사례 참고	[반영] ◦ 평가서(본안)작성시 설계 검토등을 통하여 주요 악취 발생가능 시설별 악취포집 이송, 탈취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토록 하겠음 - 기존시설의 경우 본 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 누적환경영향평가 관점에서 항목별 영향 예측, 저감방안 제시하도록 하겠음
◦ 초안에는 구조물 지하화, 에어커튼, 전동셔터, 악취포집 및 탈취, 실시간 모니터링 계획을 제시하고 있으나, 악취 영향예측은 복합악취 및 지정악취물질별로 계절별 불리한 기상조건, 환기설비 비정상 가동, 슬러지 반출 시나리오, 정전·설비고장 등 비상상황을 포함하여 재검토하여야 함.	[반영] ◦ 제시한 상황 및 추가내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서(본안) 작성을 진행 하도록 하겠음
◦ 악취 조사는 최소 4계절, 계절별 7일 이상, 주요 시간대별 측정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지구 경계부뿐만 아니라 인천체육고등학교, 인근 오피스텔·주거지, 공촌천 이용공간 등 주민 체감지점을 포함하여야 함.	[부분 반영] ◦ 악취 현황조사의 경우 4계절 조사 진행 중에 있으며, 이를 토대로 현황농도의 대표성을 검증토록 하겠음
◦ 운영 시 악취 실시간 모니터링 결과가 탈취시설 운전과 연동될 수 있도록 관리기준, 경보단계, 약품주입량 조정, 설비점검, 민원대응 절차를 구체화하여야 하며, 악취 민원 발생 시 현장조사, 원인분석, 조치결과 통보, 재발방지대책까지 포함한 관리체계를 수립하여야 함.	[반영] ◦ 탈취시설 운전과 연동 될수 있도록 관리기준, 경보단계, 약품주입량 조정, 설비점검, 민원대응 절차 등을 구체화하고 현장조사, 원인분석, 조치결과 통보, 재발방지 대책까지 포함한 관리체계를 수립하여 관리지침서에 수록하겠음.

(표 계속)

검토의견	조치계획(안)
▪ 인천광역시(관할 시)	
Ⅱ. 항목별 검토의견	
2. 대기환경분야	
◦ 공사 시 건설장비 연료사용 및 운영 시 전력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시하고 있으나,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전력사용 외에 처리공정, 슬러지 처리, 약품사용, 유지관리 차량, 비상발전기 등에 따른 배출 가능성을 검토하여 산정범위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반영] ◦ 전력사용 외에 배출 가능성을 검토하여 산정범위를 명확히 제시하도록 하겠음
◦ 운영 시 전력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신재생에너지 도입, 고효율 송풍기·펌프 적용, 에너지 절감형 계측제어 시스템, BEMS(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연계, 슬러지 처리 효율화 등 감축대책별 예상 감축량을 정량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반영] ◦ 고효율 설비 도입(전동기, 인버터, 송풍기 등) 및 친환경 신재생에너지(태양광발전, 태양광 보안등, 태양광 블록, 하이브리드 보안등)도입을 통해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를 도모하고 예상 감축량을 정량적으로 제시하여 보고서에 수록하겠음.
◦ 지상부 공원·녹지 조성계획은 온실가스 흡수원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수종별 탄소흡수량, 식재밀도, 유지관리 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며, 생태면적률 확보와 연계하여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산정하여야 함.	[반영] ◦ 수종별 탄소흡수량, 실재밀도,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생태면적률 확보와 연계한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보고서에 수록하겠음.
◦ 사후환경영향조사에서는 감축대책의 단순 이행 여부뿐만 아니라 전력사용량, 재생에너지 생산량, 에너지 원단위, 슬러지 발생량, 감축효과를 반기 또는 연단위로 확인할 수 있는 관리지표를 제시하여야 함.	[반영] ◦ 사후환경영향조사시 관리지표를 제시토록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도록 하겠음
◦ 증설 하수처리시설 경계지역은 학교와 주거지역이 인접하고 있어 하수처리시설 운영단계는 물론이고 공사 단계부터 많은 민원이 예상되므로 - 악취방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엄격한 악취기준보다도 더 강화된 악취 배출농도를 적용하여 최적의 악취 저감시설 설치·운영 필요	[반영] ◦ 금회 증설시설은 악취 발생원 개별포집, 밀폐화, 구역화 집중 배치, 다중 악취처리시설 등을 통해 악취저감대책을 마련하고 악취 배출 허용기준(악취방지법 제 7조)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최적의 악취저감시설 설치 및 운영 계획을 수립하겠음.

(표 계속)

검토의견	조치계획(안)
▪ 인천광역시(관할 시)	
Ⅱ. 항목별 검토의견	
3. 수 환경 분야	
◦ 공촌천 및 인근 수계는 사업시행에 따른 직접적 영향권에 포함되므로, 수질 현황조사는 pH, DO, BOD, TOC, SS, T-N, T-P, 총대장균군 외에도 필요시 탁도, 유류성분, 전기전도도 등을 포함하여 공사 전·중·후 변화가 확인될 수 있도록 보완하여야 함.	[부분 반영] ◦ 평가서(본안) 작성시 검토를 통하여 필요시 기존 항목 외에 항목추가를 고려하도록 하겠음
◦ 운영 시 계획방류수질은 법정기준 충족 여부뿐만 아니라 공촌천 및 하류 해양수역의 수질목표, 부영양화 가능성, 갈수기 희석조건, 집중강우 후 월류 또는 비점오염 유입 가능성을 고려하여 검토하여야 함.	[반영] ◦ 제시한 항목 등을 검토하여 평가서(본안)을 작성 하도록 하겠음 ◦ 본 사업의 방류수질기준은 법적방류수질기준보다 강화된 방류수질 기준을 적용하였으며 방류수역 시뮬레이션 결과 방류하천인 공촌천의 수질이 개선(T-N 20.7%)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관련 내용을 보고서에 수록하겠음. ◦ 공사시 토사 유출 및 비점오염의 방류하천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환경대책(침사지, 세륜기 등)을 수립하겠음.
◦ 공사 시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 예방을 위하여 공사 전에 침사지를 설치하고, 절·성토 및 우기시 토목공사 중지하는 등의 토사유출 최소화 계획 수립·시행하여야 함	[반영] ◦ 토사유출 최소화 계획 수립·시행하도록 하겠음 ◦ 공사시 강우에 의한 토사 유출 및 비점오염의 방류하천 유입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환경대책(침사지, 세륜기 등)을 수립하고 우기시 강우강도 기준을 설정하여 토목 공사 중지 기준을 마련하겠음.
4. 토지환경	
◦ 본 사업은 기존 공공하수처리시설 부지 내 증설사업으로 별도 사유지 편입은 제한적이나, 지하 하수처리공간과 지상부 공원·체육·휴식공간을 복합적으로 계획하고 있으므로 시설 안전, 악취 차단, 주민 이용성, 생태완충기능이 상호 충돌하지 않도록 토지이용계획을 보완하여야 함.	[반영] ◦ 시설 안전, 악취 차단, 주민 이용성, 생태완충기능이 상호 충돌하지 않도록 토지이용계획을 보완하여 평가서(본안)에 수록하도록 하겠음
◦ 초안에서는 현황 생태면적률 74.6%에서 목표 생태면적률 42.8%로 감소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으므로, 목표기준 충족 여부와 별개로 생태기능 저하를 최소화하기 위한 투수포장 확대, 생태녹지 확충, 다층식재, 빗물정원, 생태수로, 수분보유형 녹지 조성방안을 추가 검토하여야 함.	[반영] ◦ 실시설계 계획(포장, 녹지계획 등)을 반영하여, 추가 생태면적률 추가 검토하여 평가서(본안)을 작성하도록 하겠음
◦ 기존 하수처리시설 및 관련 시설 주변은 장기간 운영 과정에서 유류, 약품, 슬러지, 관로 누수 등에 의한 국지적 토양오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공사 착수 전 굴착 예정지, 기존 시설물 주변, 폐유보관 예정지, 관로 인접부를 중심으로 토양오염도 조사를 보완하여야 함.	[반영] ◦ 폐유저장소, 차집관거, 처리수 유출관거 등의 위치 등을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에 보완 반영하도록 하겠음

(표 계속)

검토의견	조치계획(안)
▪ 인천광역시(관할 시)	
Ⅱ. 항목별 검토의견	
5. 생활환경 분야	
◦ 공사 시 인천체육고등학교에서 소음 환경보전목표 기준 초과 가능성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해당 정온시설을 중심으로 공종·장비별 소음원, 동시가동 시나리오, 공사단계별 소음예측을 보완하여야 함.	[반영] ◦ 평가서(본안) 작성시 공사 단계별 소음예측을 진행하여 저감방안 수립 및 제시 하도록 하겠음
◦ 저소음·저진동 장비 사용, 가설방음판넬 및 이동식 방음벽 설치, 장비 분산투입, 주간작업 원칙, 작업시간 제한, 공사차량 속도 제한 등 저감대책은 설치위치, 높이, 연장, 성능, 적용 공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반영] ◦ 평가서(초안)에 제시한 저감대책을 구체적으로 보완하여 평가서(본안)에 제시하도록 하겠음
◦ 학교 수업시간, 시험기간, 야외활동 시간, 기숙사 거주 등을 고려하여 고소음 공정의 작업시간을 조정하고, 민원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기에는 이동식 소음측정기 또는 실시간 모니터링 장비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함.	[반영] ◦ 평가서(본안) 작성시 공사시 소음 실시간모니터링 장비 운영을 저감대책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음
◦ 사후환경영향조사 시 소음·진동 조사지점은 인천체육고등학교 외에도 인근 주거·업무시설, 공촌천 이용공간 등 정온시설을 포함하여 확대하고, 기준 초과 시 즉시 공정조정 및 추가 방음대책을 시행하는 관리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반영] ◦ 평가서(본안) 작성시 인근 정온시설 등을 재검토하여 조사지점을 선정하도록 하겠으며, 기준 초과시 방음대책을 시행하는 관리체계를 제시하도록 하겠음
◦ 조경계획은 단순 차폐식재가 아니라 악취·소음 완충, 미세먼지 저감, 탄소흡수, 생태연결 기능을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수종선정과 식재구조를 보완하여야 함.	[반영] ◦ 악취·소음 완충, 미세먼지 저감, 탄소흡수, 생태연결 기능을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수종선정과 식재구조를 보완하도록 하겠음
6. 기타	
◦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에 해당할 경우 사업의 인·허가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그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의 규모 그 밖에 인허가 등의 내용에 관하여 인천광역시장(환경안전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기존 청라지구 진행시 생태계보전 부담금을 부과된 상태이며, 금회사업의 경우 청라지구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서 추가적인 기 반영된 훼손예정 면적에 포함되어 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3) 인천광역시 서해구(사업대상지 지자체)

<표 2-5> 관계 행정기관(서해구) 검토의견 및 반영여부

검토의견	조치계획(안)
▪ 인천광역시 서해구(사업대상지 지자체)	
Ⅰ. 총괄	
◦ 본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검토의견과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구분하여 본안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하며 반영되지 않은 사항은 미반영 사유와 함께 대안 제시	◦ 검토의견과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구분하여 본안에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반영되지 않은 사항은 미반영 사유와 함께 제시하겠음
◦ 평가서상의 환경현황 조사내용, 환경영향 예측결과 및 저감대책 등의 모든 내용은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가능한 정량화하여야 함.	◦ 평가서상의 환경현황 조사내용, 환경영향 예측결과 및 저감대책 등의 모든 내용은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가능한 정량화하여 평가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음
◦ 공사 중 예측하지 못한 상황 및 주변환경에 추가적 영향이 있거나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추가 저감대책 및 민원해소책을 강구·시행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함.	◦ 공사 중 예측하지 못한 상황 및 주변환경에 추가적 영향이 있거나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추가 저감대책 및 민원해소책을 강구·시행한 후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음
Ⅱ. 항목별 검토의견	
1. 자연생태환경 분야	
◦ 현지 조사 결과 법정 보호종이 발견됨에 따라 이들의 진동 감지능력이 예민함을 감안하여 가급적 산란기 또는 야간에는 소음·진동 작업은 지양하고, 특히 서식지 훼손이 예상되는 경우 대체서식지 조성 및 이주대책 수립 등 적극적인 보호대책 마련 후 공사를 재개해야 함.	[반영] ◦ 금회 사업부지가 환경영향평가 및 인·허가 진행이 완료된 청라지구 내에 위치함에 따라, 청라지구사업을 통하여 포획·방사 허가증을 받아 맹꽁이 포획·이주를 진행하고 있음 - 허가번호 제ES202608ECP00015호(한강유역환경청) 허가기간 2026.09.03.~2026.10.31.
◦ 조경계획 추진 시 외래종이나 적지 적수가 아닌 수종은 가급적 최소화하고, 환경정화수종을 활용한 자연친화적 녹지계획 수립	[반영] ◦ 환경정화수종을 활용한 자연친화적 녹지계획을 수립하여 평가서(본안)에 제시하도록 하겠음 ◦ 외래종이나 적지 적수가 아닌 수종은 가급적 최소화 하겠음.
2. 대기환경분야	
◦ 공사 시 건설장비 투입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해 노후 건설장비 사용 지양 및 고효율 건설기계 사용, 건설장비 공회전 금지, 효율적인 공사계획 수립을 통한 건설장비의 운영 최소화 및 적정배치 하고, 운영 시에는 저탄소형 토지이용(자연순응·집약형 공간구조 형성, 바람통로 확보), 에너지 절감 및 효율 향상(유휴부지 및 건축물 등에 신재생에너지 적극 도입, 에너지 이용시설의 효율 향상 등), 생태녹지 확보, 친환경 건축 및 녹색교통 체계 마련 등을 통한 온실가스 저감방안 수립	[반영] ◦ 검토의견에서 제시한 노후 건설장비 사용 지양 등의 내용 등을 검토하여 온실가스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평가서(본안)에 제시하도록 하겠음 ◦ 고효율 설비 도입(전동기, 인버터, 송풍기 등) 및 친환경 신재생에너지(태양광발전, 태양광 보안등, 태양광 블록, 하이브리드 보안등)도입을 통해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를 도모하고 예상 감축량을 정량적으로 제시하여 보고서에 수록하겠음.

(표 계속)

검토의견	조치계획(안)
▪ 인천광역시 서해구(사업대상지 지자체)	
Ⅱ. 항목별 검토의견	
2. 대기환경분야	
◦ 공사 시 각종 공사장비 가동, 절·성토, 개착 공사에 따른 공사차량의 운행 및 토사이동 등으로 발생하는 비산먼지로 인한 인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비산먼지 억제시설(방진벽, 방진망, 살수시설 등)을 사전에 설치하고 자동식 세륜·세차시설은 수송차량의 측면, 후면 돌출부위에 부착된 분체상 물질을 제거하여 도로 주행 시 비산되지 않도록 설치·운영	[반영] ◦ 비산먼지 억제시설(방진벽, 방진망, 살수시설 등)을 사전에 설치하고 자동식 세륜·세차시설은 수송차량의 측면, 후면 돌출부위에 부착된 분체상 물질을 제거하여 도로 주행 시 비산되지 않도록 설치·운영 하도록 하겠음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2]에 의거「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악취배출시설에 해당하는 바, 설치 예정인 악취방지시설을 구체화(용량, 약품 등)하고 방지시설의 위치 및 배출구의 방향은 정온시설(학교, 주거시설 등)에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지점으로 선정	[반영] ◦ 방지시설의 위치 및 배출구의 방향은 정온시설(학교, 주거시설 등)에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지점으로 선정하여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음
◦ 절·성토 운반차량의 토사 적재높이 준수, 덮개 관리 철저 등을 통한 주거지 인근 민원 발생 사전 예방	[반영] ◦ 절·성토 운반차량의 토사 적재높이 준수, 덮개 관리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음
◦ 건설장비는 동일 작업 구간 내 집중 투입을 억제하기 위한 작업공정을 수립하고 배출가스의 원활한 대기확산을 위하여 이른 아침이나 야간작업 지양	[반영] ◦ 집중 투입을 억제하기 위한 작업공정을 수립하고 이른 아침이나 야간작업 지양하여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음
3. 수환경분야	
◦ 토공사 시 사면 등의 일시적 노출에 따라 강우 시 토사가 공공수역으로 유출되어 2차 환경오염의 우려가 예상됨에 따라 우기를 피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배수구역별 충분한 용량의 가배수로 및 침사지 설치등 다각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공공수역 오염을 예방	[반영] ◦ 토공사 시 사면 등의 일시적 노출에 따라 강우 시 토사가 공공수역으로 유출을 방지를 위하여 다각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음
◦ 하수처리수 공촌천 방류에 따른 하천의 수질 부하량 증가 및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	[반영] ◦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여 평가서(본안)을 작성하도록 하겠음
◦ 공원 및 주차장 조성 시 투수성 포장, 식생 수도 등 저영향개발 기법을 활용한 물순환의 건전성 유지	[반영] ◦ 물순환 건정성 유지를 위하여 저영향개발 기법(투수성 포장 등)을 활용하도록 하겠음
◦ 장비사용으로 인한 폐유 등 지정폐기물이 고정적으로 발생 할 수 있는 작업은 최대한 지정된 장소(정비소 등)에서 하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은 관련법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며 만일의 사고 발생 시 토양 및 수질오염 최소화를 위해 사업지 인근 방제장비 구비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반영] ◦ 폐유, 지정폐기물의 경우 검토의견에서 제시한 대로 관련법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으며, 사고 발생 시 토양 및 수질오염 최소화를 위해 사업지 인근 방제장비 구비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음

(표 계속)

검토의견	조치계획(안)
▪ 인천광역시 서해구(사업대상지 지자체)	
Ⅱ. 항목별 검토의견	
4. 생활환경분야	
◦ 정온시설이 위치한 구간의 공사·운영 시 생활환경 피해 (소음·진동, 미세먼지 등) 발생이 예상되는바 영향 범위를 면밀히 예측하고 휴일 및 아침·저녁시간 등 취약시간대 소음발생작업 자제, 방음벽 설치 등 최적의 저감대책 강구를 통한 피해 최소화	[반영] ◦ 생활환경 피해 영향범위를 면밀이 예측하고, 최적의 저감대책(가설방음판넬, 이동식방음벽 등)의 수립을 통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여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음
◦ 특히 저감방안 수립은 법적 기준보다는 주민의 체감 소음도에 기준을 두어야 하며, 설계 단계에서부터 구체적 소음 및 진동 저감 방안을 수립하고, 저감방안 수립·시행 후에도 민원 등이 발생할 경우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가적인 대처와 처리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반영] ◦ 법적기준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소음대책을 수립하겠으며, 민원 등이 발생할 경우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음
◦ 민원다수 발생지역에 대하여 주민홍보를 실시하고, 소음발생 공정 전 주변지역 안내문 설치 등을 통한 사전고지	[반영] ◦ 소음발생 공정 전 주변지역(공사 휀스 등)에 안내문 설치 등을 통한 사전고지를 진행하여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음
◦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중 재활용 가능한 것은 최대한 재이용하여 폐기물 배출량을 줄이고, 위탁하여 처리할 경우 폐기물의 수집·운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도로 교통체증, 폐기물 흩날림 등으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이 예상되므로 환경오염물질 저감을 위하여 가능한 서해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업체에서 처리할 것.	[반영] ◦ 폐기물 현장 및 위탁처리 진행시 적합한 법에 따라 처리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위탁처리 업체의 경우 최우선 적으로 서해구 관내 업체를 이용하여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음

다. 주민설명회

<표 2-6> 주민의견 요지 및 반영여부

주민의견	조치계획(안)
▪ 청라3동 주민자치회	
1. 경관 및 악취 저감 대책	
◦ 사업부지 외곽 경계에 폭 10m 이상 마운딩 및 교목·관목 혼합 수림대 조성	◦ 사업부지 현황을 고려하여 외곽 경계에 폭 8~10m 마운딩 및 교목·관목 혼합 수림대를 조성하겠음.
◦ 병원·학교 방향 이중 차폐녹지 설치	◦ 병원 및 학교 방향으로 다충식재를 통한 차폐녹지를 설치하겠음.
◦ 조감도·단면도·식재계획도 등 시각자료 보완 제출	◦ 평가서(본안) 보고서에 수록하도록 하겠음
◦ 악취 전량(100%) 포집 시스템 의무화	◦ 금회 증설사업에 대해 악취 전량을 포집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하겠음
◦ 탈취시설 다단계 공정 적용 및 체감 무취 수준 관리	◦ 탈취시설은 다단계 공정을 적용하겠음. ◦ 악취 배출 허용기준(악취방지법 제 7조)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체감 악취 수준을 현저히 저감하겠음.
◦ 실시간 악취 모니터링 및 주민 공개 시스템 구축	◦ 실시간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전처리시설, 탈취설비 유입부 및 배출구)을 구축하겠음. ◦ 주민공개 시스템 구축여부는 주무관청(인천광역시)과 협의하여 결정하겠음.
2. 방류수 수질 목표 상향	
◦ 2025년 실제 방류수 수질보다 개선된 수준으로 목표 재설정	◦ 법적 방류수질기준 보다 강화된 보증수질 기준을 적용하여 현재 방류수질보다 개선되도록 하겠음
◦ T-N, T-P 등 부영양화 유발 항목 강화 기준 제시	
◦ 재이용수 역시 동일 수준 이상으로 관리	
3. 공촌 유수지 방류방식 재검토	
◦ 유수지 내부 방류 대신 수문 외 직접 방류(안) 검토	◦ 유수지 방류의 대하여 환경적으로 검토(수질 모델링 등)결과 공촌천에 금회 처리 수 유입 시 수질이 개선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코자 해양방류에 관하여 관련부서 문의결과 향후 공촌천 수문개선 계획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검토예정임
◦ 장기 수질예측 시뮬레이션 결과 공개	◦ 방류수역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고서에 수록하겠음.
◦ 유수지 수질관리 강화계획 수립	◦ 본 사업은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으로 사업범위에 미 해당되며 주무관청의 관련 계획에 따라 조치되어야 함.
4. 상부 주민편익시설 재검토	
◦ 단순 체육시설이 아닌 주민 소요 반영 시설로 계획	◦ 해당 부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및 하수도시설 부지로서 체육시설을 포함하여야 함.
◦ 파크골프장(18홀 또는 최소 9홀) 조성 검토	◦ 도입되는 체육시설은 대상지 주변 운동시설현황 및 이용자 현황을 검토한 결과 1km 이내에 공촌유수지 체육공원 파크골프장이 있으며, 이용자 분석결과 인천시의 테니스 이용객이 2024년기준 62만으로 급증하고 있어 테니스장을 도입시설로 선정하였음
◦ 주민 의견수렴 후 시설 확정	◦ 추후 체육시설 관리주체인 인천광역시와 협의하여 최종 결정토록 하겠음
◦ 변경(안) 조감도 공개	◦ 평가서(본안) 보고서에 수록하도록 하겠음

(표 계속)

주민의견	조치계획(안)
▪ 청라3동 주민자치회	
5. 소음 저감 대책	
◦ 공사 및 운영 과정 소음 차폐벽 설치	◦ 공사시 소음 차폐를 고려하여 가설울타리(RPP) 및 가설방음판넬을 설치하겠음. ◦ 운영시 소음 차폐를 위하여 소음발생지점에 대한 격실구획, 흡음재 설치, 방진패드 등 소음방지시설을 적용하겠음.
◦ 저소음 장비 도입 및 실시간 소음 모니터링 공개	◦ 이동식 방음벽(장비 소음 저감) 및 실시간 소음 모니터링 정보를 공개하겠음.
6. 교통 영향 최소화	
◦ 공사 차량·운영 차량으로 인한 교통 혼잡 방지 대책 마련	◦ 주요 구간에 신호수를 배치하여 교통혼잡을 방지하겠음.
◦ 학교·병원 주변 교통 안전 관리 강화	◦ 주요 구간에 신호수 또는 안내원을 배치하여 교통 혼잡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음
7. 주민 참여형 관리	
◦ 주민대표 참여 환경 모니터링 협의체 구성	◦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결정하겠음
◦ 운영 결과 정기 공개 및 주민 설명회 의무화	◦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결정하겠음
8. 재난·안전 관리	
◦ 화재·폭발·누수 등 비상 상화 대비 안전 매뉴얼 마련	◦ 비상상황 대비 안전매뉴얼은 마련하겠음.
◦ 인근 학교·병원과 연계한 비상대응 체계 구축	◦ 인근 학교·병원과 연계한 비상상황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음.
9. 장기 도시계획 연계	
◦ 청라국제도시 장기 발전계획과 조화되는 시설 설계	◦ 청라국제도시 장기 발전계획과 조화되는 시설 설계를 수행하겠음.
◦ 환경·문화·교육 복합공간으로 발전 가능성 검토	◦ 해당 부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지정되어 있으며 해당 부지의 목적 및 주변 시설, 경관 등을 고려하여 시설 계획을 수립하겠음.
10. 주민 보상 및 지원	
◦ 재산가치 하락 우려에 대한 보상 또는 대책 마련	◦ 금회 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서 청라국제도시 개발계획상 기반영된 사업이므로 본 사업으로 인한 재산가치 하락 우려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악취·소음·수질 문제로 인한 건강 피해 발생 시 보상 체계 마련	◦ 본 사업으로 인한 피해 발생시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조치하겠음.
◦ 정기 건강검진 지원 및 의료비 보조 제도 검토	◦ 관련 규정이 부재하여 반영이 불가한 사항임
◦ 주민 복지·문화·체육시설 확충 및 전용 해택 제공	◦ 관련 규정이 부재하여 반영이 불가한 사항임
◦ 사업자(LH) 측에서 청라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지역사회 기금 조성 및 지원 체계 마련	◦ 관련 규정이 부재하여 반영이 불가한 사항임

라. 주민의견서(서면) 의견

<표 2-7> 주민의견서 의견요지 및 반영여부

구 분	의견요지	반영여부(미반영 사유)	비고
강○○	◦ 테니스장은 몇몇 단체만 이용하는 곳이니 반대하며, 주민이 이용할수 있는 도서관이나 노인복지회관 및 공원필요 ◦ 방류수는 반드시 바다로 바로 나가야 합니다.	◦ 해당 부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및 하수도시설 부지로서 체육시설을 포함하여야 하며, 대상지 주변 체육시설 현황 및 주민친화시설에 대한 소요를 고려하여 테니스(이용자 지속 증가) 및 공원시설을 적용하겠음. ◦ 유수지 방류의 대하여 환경적으로 검토(수질 모델링 등)결과 공촌천에 금회 처리 수 유입 시 수질이 개선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코자 해양방류에 관하여 관련부서 문의결과 향후 공촌천 수문개선 계획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검토예정임	
권○○	◦ 방류수 고이지 않고 흘러 갈수 있게 해야하며, 머물러 있는 물에 냄새가 많이 나기에 이에 대한 대책마련 필요	◦ 유수지 방류의 대하여 환경적으로 검토(수질 모델링 등)결과 공촌천에 금회 처리 수 유입 시 수질이 개선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코자 해양방류에 관하여 관련부서 문의결과 향후 공촌천 수문개선 계획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검토예정임	
기○○	◦ 도서관이나 노인복지회관이 필요합니다.	◦ 해당 부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및 하수도시설 부지로서 체육시설을 포함하여야 함	
김○○	◦ 환경영향평가서 주민참여 요망	◦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등 주민참여 절차 진행 중	
김○○	◦ (지하)하수처리장 상단에 공원 및 테니스장이 계획되어 있는데, 테니스장은 사용 인원도 제한적이고, 사용인원도 상대적으로 적으므로, 현재 많은 주민들이 선호하고 있는 파크골프장으로 조성하여 주민들이 사용토록 함이 타당하고 합리적일수 있어 지역주민들은 강력하게 하수처리상단을 파크골프장으로 조성 할 수 있게 건의 합니다.	◦ 상부 체육시설의 경우 향후 관리주체인 인천광역시와의 협의를 통하여, 결정된 내용으로써, 체육시설의 변경에 대한 내용은 인천광역시와 협의를 통하여 추후 결정토록 하겠음	

(표 계속)

구 분	의견요지	반영여부(미반영 사유)	비고
김○○	◦ 방류수를 공촌천에 바로 흘려보내는 것은 맞지 않으며, 공촌천 수문을 개선하여서 직접 바다로 흐르게끔 해야 된다, 하천이 썩으면 주민은 살수 없습니다.	◦ 유수지 방류의 대하여 환경적으로 검토(수질 모델링 등)결과 공촌천에 금회 처리 수 유입 시 수질이 개선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코자 해양방류에 관하여 관련부서 문의결과 향후 공촌천 수문개선 계획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검토예정임	
김○○	◦ 방류수를 공촌천이 아닌 바다로 직접 방류하도록 설계 변경이 필요함	◦ 유수지 방류의 대하여 환경적으로 검토(수질 모델링 등)결과 공촌천에 금회 처리 수 유입 시 수질이 개선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코자 해양방류에 관하여 관련부서 문의결과 향후 공촌천 수문개선 계획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검토예정임	
김○○	◦ 단순 법적기준 충족이 아닌 환경안전성과 생활환경보호 지역발전 기여 등을 전제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 본 시설은 하수처리시설로서 도시계획시설임. 청라국제도시의 지역 및 주민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로서 조속한 공사 준공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하겠음.	
김○○	◦ 수질 등 환경 피해 최소화, 주민참여 보장	◦ 공사 중 환경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대기질, 소음, 진동 등에 대한 예측 및 분석을 시행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겠음.	
남○○	◦ 경관 및 악취 저감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 비가 온 후에는 특히 하수구 썩은냄새가 매우 심하니, 흐르는 물을 만들어 맑은 물을 만들어야 할 듯 합니다.	◦ 주변 경관 및 도시계획을 고려하여 경관계획을 수립하겠으며, 악취 발생원 개별 포집, 밀폐화 등의 악취 저감대책 마련하여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음 ◦ 유수지 방류의 대하여 환경적으로 검토(수질 모델링 등)결과 공촌천에 금회 처리 수 유입 시 수질이 개선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코자 해양방류에 관하여 관련부서 문의결과 향후 공촌천 수문개선 계획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검토예정임	

(표 계속)

구 분	의견요지	반영여부(미반영 사유)	비고
손○○	◦ 방류수 공촌천에 방류하지 말고, 직접 바다로 배출 할 수 있도록 설계변경 강력히 요구함 ◦ 현장감시와 현경영향평가서 주민 참여 요망 ◦ 주민편익시설로는 노인복지센타 건립	◦ 유수지 방류의 대하여 환경적으로 검토(수질 모델링 등)결과 공촌천에 금회 처리 수 유입 시 수질이 개선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코자 해양방류에 관하여 관련부서 문의결과 향후 공촌천 수문개선 계획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검토예정임 ◦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등 주민참여 진행 중 ◦ 해당 부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및 하수도 시설 부지로서 체육시설을 포함하여야 함.	
이○○	◦ 방류수를 공촌천으로 바로 흘려 보내는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 수문을 개설하여 직접 바다로 흐르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유수지 방류의 대하여 환경적으로 검토(수질 모델링 등)결과 공촌천에 금회 처리 수 유입 시 수질이 개선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코자 해양방류에 관하여 관련부서 문의결과 향후 공촌천 수문개선 계획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검토예정임	
이○○	◦ 증설 후 하수처리 후에 나온 생활오수를 공촌천에 방류하지 말고, 바다에 직접 방류를 부탁드립니다. ◦ 하수처리시설 사업 후에 상부에 테니스장 및 체육시설을 계획하고 있으나, 많은 주민들이 이용이 가능한 공원으로 조성을 바랍니다.	◦ 유수지 방류의 대하여 환경적으로 검토(수질 모델링 등)결과 공촌천에 금회 처리 수 유입 시 수질이 개선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코자 해양방류에 관하여 관련부서 문의결과 향후 공촌천 수문개선 계획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검토예정임 ◦ 해당 부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및 하수도 시설 부지로서 체육시설을 포함하여야 함.	
이○○	◦ 하수처리시설 추가 증설시 악취로 인해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주거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어 반대합니다. <다른장소에 설치해주세요>	◦ 금회 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서 청라국제도시 개발계획상 기 반영된 시설이며, 지역 및 주민생활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로서 해당 부지 내 조속한 공사 준공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하겠음.	
이○○	◦ 공촌천 수문을 개선해 주세요 하천이 썩으면, 주민은 살 수 없습니다.	◦ 유수지 방류의 대하여 환경적으로 검토(수질 모델링 등)결과 공촌천에 금회 처리 수 유입 시 수질이 개선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코자 해양방류에 관하여 관련부서 문의결과 향후 공촌천 수문개선 계획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검토예정임	

(표 계속)

구 분	의견요지	반영여부(미반영 사유)	비고
채○○	◦ 주민복지대책 강화 대기질, 악취, 수질, 소음·진동 측정기준이 현 60,500㎥ 기준인지 아니면, 40,000㎥ 증설 포함된 105,000㎥ 기준인지	◦ 측정기준의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인천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등을 준용 ◦ 측정범위의 경우 전체 부지 기준으로 진행	
최○○	◦ 예정지 주변에 현대 아산병원과 청라스타필드와 인접하여 있어 청라의 대표시설 주변에 하수처리시설 증설은 악취 예방과 부유물 방지에 사전 조치를 해야함	◦ 증설시설은 악취 발생원 개별포집, 밀폐화, 구역화 집중 배치, 다중 악취처리시설 등을 통해 악취저감대책을 마련하였음 ◦ 공촌처리구역은 일부 불완전분류식 지역으로 우기시 토사유출을 통한 오염물질의 하천 유입 및 하천 퇴적물 교란 등으로 인한 악취발생 우려가 있음. 이에 대한 방지대책은 주무관청의 하수관거 및 하천정비 계획에 따라 시행되어야 함.	
한○○	◦ 방류수를 직접 바다로 배출 할 수 있도록 설계변경 요구	◦ 유수지 방류의 대하여 환경적으로 검토(수질 모델링 등)결과 공촌천에 금회 처리 수 유입 시 수질이 개선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코자 해양방류에 관하여 관련부서 문의결과 향후 공촌천 수문개선 계획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검토예정임	
홍○○	◦ 대기, 수질, 소음 등 환경피해 최소화 대책 필요 ◦ 환경영향평가의 투명성 확보 및 주민참여 보장요망	◦ 주민의견 및 관계기관 검토의견 등을 최대한 반영하여 강화된 대책 마련하여 평가서(본안)에 수록하겠음 ◦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등 주민참여 진행 중	

제출용

청라3동 주민자치회

공정과 조화 위해 내용을 열어가는 서구

수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참조 영종청라계획과
제목 「공촌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자치회 집단의견 제출

1.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촌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하여 청라3동 주민자치회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아래와 같이 집단의견을 제출하오니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사업개요
사 업 명 : 공촌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1-559번지 일원
사 업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4. 주민자치회 집단 의견

경관 및 악취 저감 대책
방류수 수질 목표 상향
공촌 유수지 방류방식 재검토
상부 주민편익시설 재검토
소음 저감 대책
교통 영향 최소화
주민 참여형 관리
재난·안전 관리
장기 도시계획 연계
주민 보상 및 지원
재산가치 하락 우려에 대한 보상 또는 대책 마련
악취·소음·수질 문제로 인한 건강 피해 발생 시 보상 체계 마련
정기 건강검진 지원 및 의료비 보조 제도 검토
주민 복지·문화·체육시설 확충 및 전용 혜택 제공
사업자(LH) 측에서 청라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지역사회 기금 조성 및 지원 체계 마련

5. 종합 의견

공촌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청라국제도시 핵심 생활권 중심부에 위치한 기반시설 사업으로, 단순한 법적 기준 충족 수준이 아닌 최고 수준의 환경안전성과 생활환경 보호, 주민 보상 및 지역발전 기여를 전제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주민자치회는 상기 의견의 환경영향평가서 반영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첨부서류: 주민자치 집단의견서

인천광역시서구 청라3동 주민자치 회장 강미경

담당자	환경분과장 임원경	부회장	이부출 손윤주	회장	강미경

협조자
시행 청라3동주민자치 (2026. 05. 14.) 접수
우 22765 인천 서구 서곶로 307 / http://www.seo.incheon.kr
전화 010-8745-3425 팩스 / /

<그림 2-8> 주민의견 제출서

(그림 계속)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주민의견 제출서

사업명	공촌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환경영향평가
사업장 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1-559번지 일원
사업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의견제출자	성명: 주소:
평가서초안에 관한 의견	테니스장은 멀리 안쪽에 이용하는것이 안전합니다 주변에 이용객수 많은 도서관이나 노인복지관이 필요합니다. 최소한 공원조성도 필요합니다 *.방류수는 반드시 하천로 바로 나가야 합니다.
공청회 개최에 관한 의견	- 개최 필요성(해당하는 곳에 √표 합니다) : 필요[√], 불필요[ ] - 이유(개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공청회는 반드시 개최해야 합니다. 주민들의 알권리에 해당하며 의견수렴이 필요합니다 *.시화호처럼 생활폐의 피해를줄때 혼란야만 해결됩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라 평가서초안의 내용 및 공청회 개최의 필요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제출자 강

한국토지주택공사장 귀하

처리절차

주민의견 제출	→	접수	→	의견수렴 여부 결정	→	주민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주민		사업자/해당 행정기관		사업자/해당 행정기관		사업자/해당 행정기관

210㎜×297㎜[백상지 80g/㎡]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주민의견 제출서

사업명	공촌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환경영향평가
사업장 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1-559번지 일원
사업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의견제출자	성명 주소
평가서초안에 관한 의견	5천/1000년 방류구 고려적 않은 측려갈수있게 해야한다 파묻어 있는 물에 빙에가 잘이난다
공청회 개최에 관한 의견	- 개최 필요성(해당하는 곳에 √표 합니다) : 필요[√], 불필요[ ] - 이유(개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시화 호홍해야 같은 방안과 아이디어가 타당된것이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라 평가서초안의 내용 및 공청회 개최의 필요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제출자 [illegible]

한국토지주택공사장 귀하

처리절차

주민의견 제출	→	접수	→	의견수렴 여부 결정	→	주민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주민		사업자/해당 행정기관		사업자/해당 행정기관		사업자/해당 행정기관

210㎜×297㎜[백상지 80g/㎡]

(그림 계속)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주민의견 제출서

사업명	공촌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환경영향평가
사업장 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1-559번지 일원
사업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의견제출자	성명 주소
평가서초안에 관한 의견	도서관내 노인 복지회관이 필요합니다.
공청회 개최에 관한 의견	- 개최 필요성(해당하는 곳에 √표 합니다) : 필요[ ], 불필요[ ] - 이유(개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제한 청청하는 반드시 개최하여야 합니다 주민들의 알권리에 대응하여 의견수렴이 필요하다 생각하는 바로 바이로 반드시 개최하여야 합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라 평가서초안의 내용 및 공청회 개최의 필요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제출자 기

한국토지주택공사장 귀하

처리절차

주민의견 제출	→	접수	→	의견수렴 여부 결정	→	주민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주민		사업자/해당 행정기관		사업자/해당 행정기관		사업자/해당 행정기관

210mm×297mm[백상지 80g/㎡]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주민의견 제출서

사업명	공촌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환경영향평가
사업장 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1-559번지 일원
사업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의견제출자	
평가서초안에 관한 의견	환경영향평가서 주민참여 모임
공청회 개최에 관한 의견	- 개최 필요성(해당하는 곳에 √표 합니다) : 필요[√], 불필요[ ] - 이유(개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라 평가서초안의 내용 및 공청회 개최의 필요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제출자 김

한국토지주택공사장 귀하

처리절차

주민의견 제출	→	접수	→	의견수렴 여부 결정	→	주민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주민		사업자/해당 행정기관		사업자/해당 행정기관		사업자/해당 행정기관

210mm×297mm[백상지 80g/㎡]

(그림 계속)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주민의견 제출서

사업명	공촌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환경영향평가
사업장 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1-559번지 일원
사업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의견제출자	
평가서초안에 관한 의견	
공청회 개최에 관한 의견	- 개최 필요성(해당하는 곳에 √표 합니다) : 필요[ ], 불필요[ ] - 이유(개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라 평가서초안의 내용 및 공청회 개최의 필요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제출자 김

한국토지주택공사장 귀하

처리절차

주민의견 제출	→	접수	→	의견수렴 여부 결정	→	주민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주민		사업자/해당 행정기관		사업자/해당 행정기관		사업자/해당 행정기관

210mm×297mm[백상지 80g/㎡]

※ 공촌 공공 하수 처리시설 증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의하면

1. 지하 하수처리장 상단에 공원및 테니스장이 계획되어 있는데

2. 테니스장은 사용 인원도 제한적이고 사용인원도 상대적으로 적으므로

1. 현재 많은 주민들이 선호하고 있는 파크골프장으로 조성하여 주민들이 사용토록 함이 타당하고 합리적일수 있어 저먹 주민들은 정력적게 하수처리 상단을 파크골프장으로 조성 할수있게 건의 합니다.

(그림 계속)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주민의견 제출서

사업명	공촌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환경영향평가
사업장 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1-559번지 일원
사업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의견제출자	
평가서초안에 관한 의견	방류수를 공촌천이 아닌 바다로 직접 방류하도록 해야 한다. 공촌천 수문을 개선과 때에 직접 바다로 흐르게끔 해야 한다. 공촌이 썩으면 주민은 산다가 없습니다.
공청회 개최에 관한 의견	- 개최 필요성(해당하는 곳에 √표 합니다) : 필요[√], 불필요[ ] - 이유(개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공청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민들의 많은 의견이 대표 모두의 의견수렴이 필요합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라 평가서초안의 내용 및 공청회 개최의 필요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제출자 김

한국토지주택공사장 귀하

처리절차

주민의견 제출	→	검수	→	의견수렴 여부 결정	→	주민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주민		사업자/해당 행정기관		사업자/해당 행정기관		사업자/해당 행정기관

210mm×297mm[백상지 80g/㎡]

이재 / 청라3동 / 2026-05-14 16:26:39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주민의견 제출서

사업명 공촌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환경영향평가

사업장 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1-559번지 일원

사업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의견제출자 성명 / 주소

평가서초안에 관한 의견 방류수를 공촌천이 아닌 바다로 직접 방류하도록 해야 한다.

공청회 개최에 관한 의견 - 개최 필요성(해당하는 곳에 √표 합니다) : 필요[√], 불필요[ ]
- 이유(개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라 평가서초안의 내용 및 공청회 개최의 필요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제출자 김

한국토지주택공사장 귀하

처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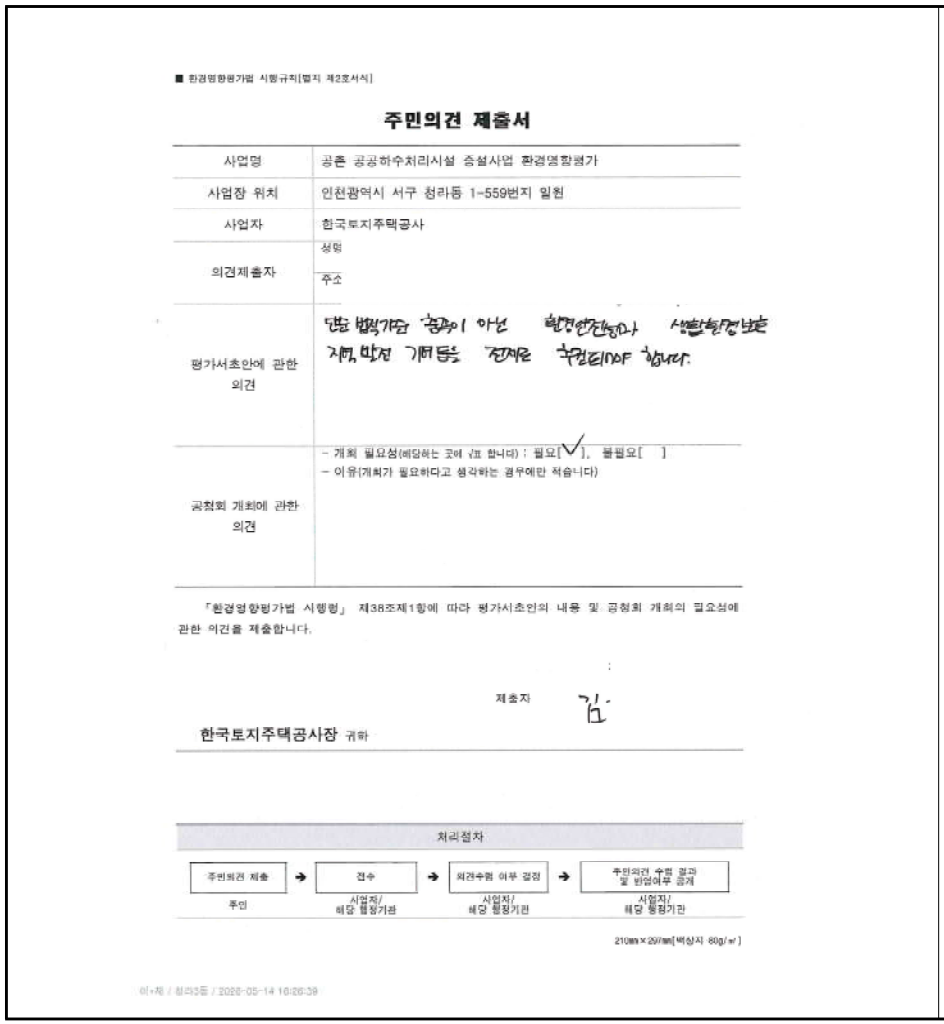
주민의견 제출 → 검수 → 의견수렴 여부 결정 → 주민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주민 / 사업자/해당 행정기관 / 사업자/해당 행정기관 / 사업자/해당 행정기관

210mm×297mm[백상지 80g/㎡]

이재 / 청라3동 / 2026-05-14 16:26:39

(그림 계속)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주민의견 제출서

사업명	공촌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환경영향평가
사업장 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1-559번지 일원
사업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의견제출자	성명 주소
평가서초안에 관한 의견	대표 법적개념 '공공이 아닌 환경연구원과 산업활성화보존 지역, 박점 기대등 전제로 주민티이OF 합니다.
공청회 개최에 관한 의견	- 개최 필요성(해당하는 곳에 √표 합니다) : 필요[✓], 불필요[ ] - 이유(개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라 평가서초안의 내용 및 공청회 개최의 필요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제출자 김

한국토지주택공사장 귀하

처리절차

주민의견 제출 (주민) → 접수 (사업자/해당 행정기관) → 의견수렴 여부 결정 (사업자/해당 행정기관) → 주민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사업자/해당 행정기관)

210mm×297mm[백상지 80g/㎡]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주민의견 제출서

사업명	공촌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환경영향평가
사업장 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1-559번지 일원
사업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의견제출자	성명 주소
평가서초안에 관한 의견	• 유휴동 환경피해 최소화 • 유입 청야 보장
공청회 개최에 관한 의견	- 개최 필요성(해당하는 곳에 √표 합니다) : 필요[✓], 불필요[ ] - 이유(개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라 평가서초안의 내용 및 공청회 개최의 필요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제출자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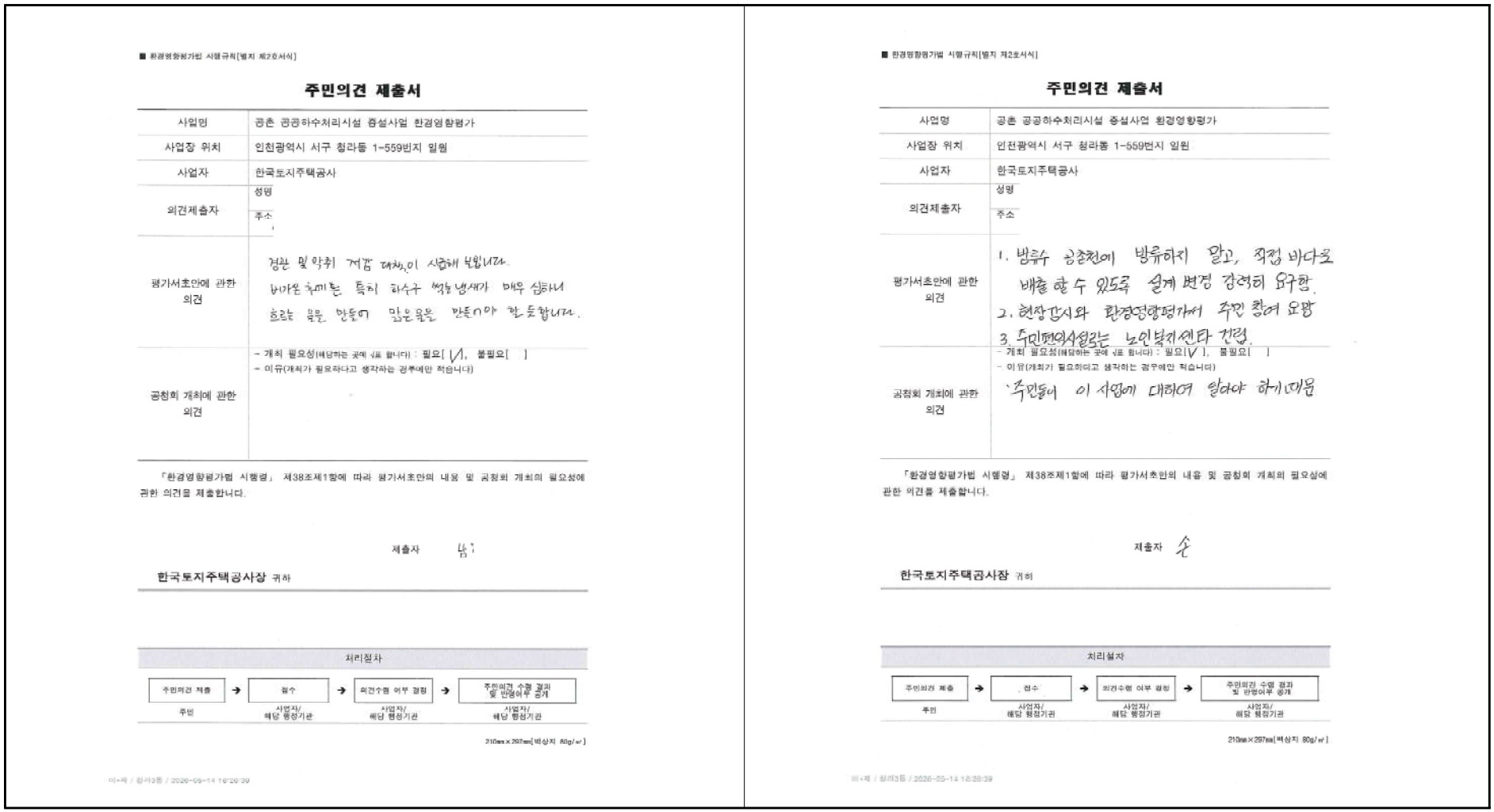
한국토지주택공사장 귀하

처리절차

주민의견 제출 (주민) → 접수 (사업자/해당 행정기관) → 의견수렴 여부 결정 (사업자/해당 행정기관) → 주민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사업자/해당 행정기관)

210mm×297mm[백상지 80g/㎡]

(그림 계속)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주민의견 제출서

사업명	공촌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환경영향평가
사업장 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1-559번지 일원
사업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의견제출자	성명 주소
평가서초안에 관한 의견	경관 및 악취 저감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남아온 하페는 특히 하수구 썩는 냄새가 매우 심하니 흐르는 물은 만들지 말은 물은 만들지마 합도합니다.
공청회 개최에 관한 의견	- 개최 필요성(해당하는 곳에 √표 합니다) : 필요[√], 불필요[ ] - 이유(개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라 평가서초안의 내용 및 공청회 개최의 필요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제출자 남기

한국토지주택공사장 귀하

처리절차

주민의견 제출	→	접수	→	의견수렴 여부 결정	→	주민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주민		사업자/해당 행정기관		사업자/해당 행정기관		사업자/해당 행정기관

210mm×297mm[백상지 80g/㎡]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주민의견 제출서

사업명	공촌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환경영향평가
사업장 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1-559번지 일원
사업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의견제출자	성명 주소
평가서초안에 관한 의견	1. 방류수 공촌천에 방류하지 말고, 직접 바다로 배출 할 수 있도록 설계 변경 강력히 요구함. 2. 현장공시와 환경영향평가에 주민 참여 요망 3. 주민편의시설로는 노인복지센타 건립.
공청회 개최에 관한 의견	- 개최 필요성(해당하는 곳에 √표 합니다) : 필요[V], 불필요[ ] - 이유(개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주민들이 이 사업에 대하여 알아야 하기때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라 평가서초안의 내용 및 공청회 개최의 필요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제출자 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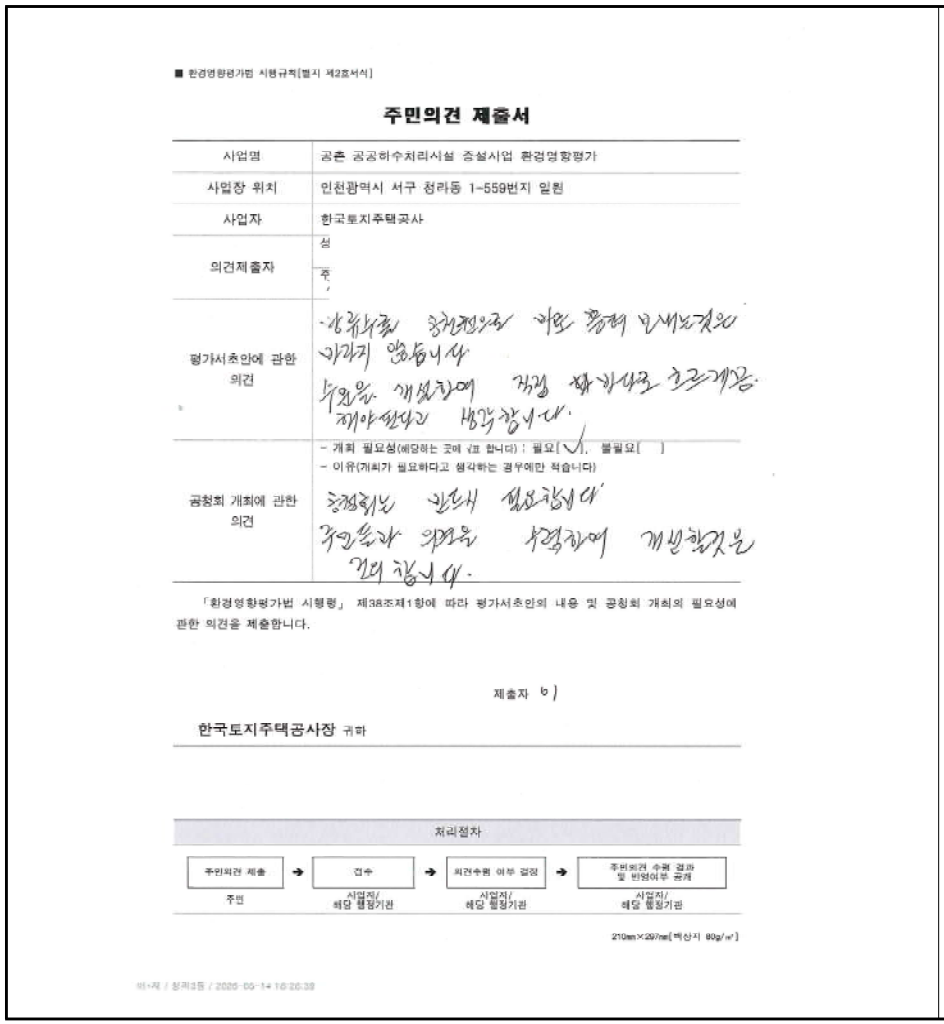
한국토지주택공사장 귀하

처리절차

주민의견 제출	→	접수	→	의견수렴 여부 결정	→	주민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주민		사업자/해당 행정기관		사업자/해당 행정기관		사업자/해당 행정기관

210mm×297mm[백상지 80g/㎡]

(그림 계속)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주민의견 제출서

사업명	공촌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환경영향평가
사업장 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1-559번지 일원
사업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의견제출자	성 주
평가서초안에 관한 의견	소음부분 공청회에서 많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었음 주민들은 개발로 인해 많은 소음에 노출되므로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하였음
공청회 개최에 관한 의견	- 개최 필요성(해당하는 곳에 √표 합니다) : 필요[√], 불필요[ ] - 이유(개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공청회는 반드시 필요하다 주민들과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할것은 개선하여야 함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라 평가서초안의 내용 및 공청회 개최의 필요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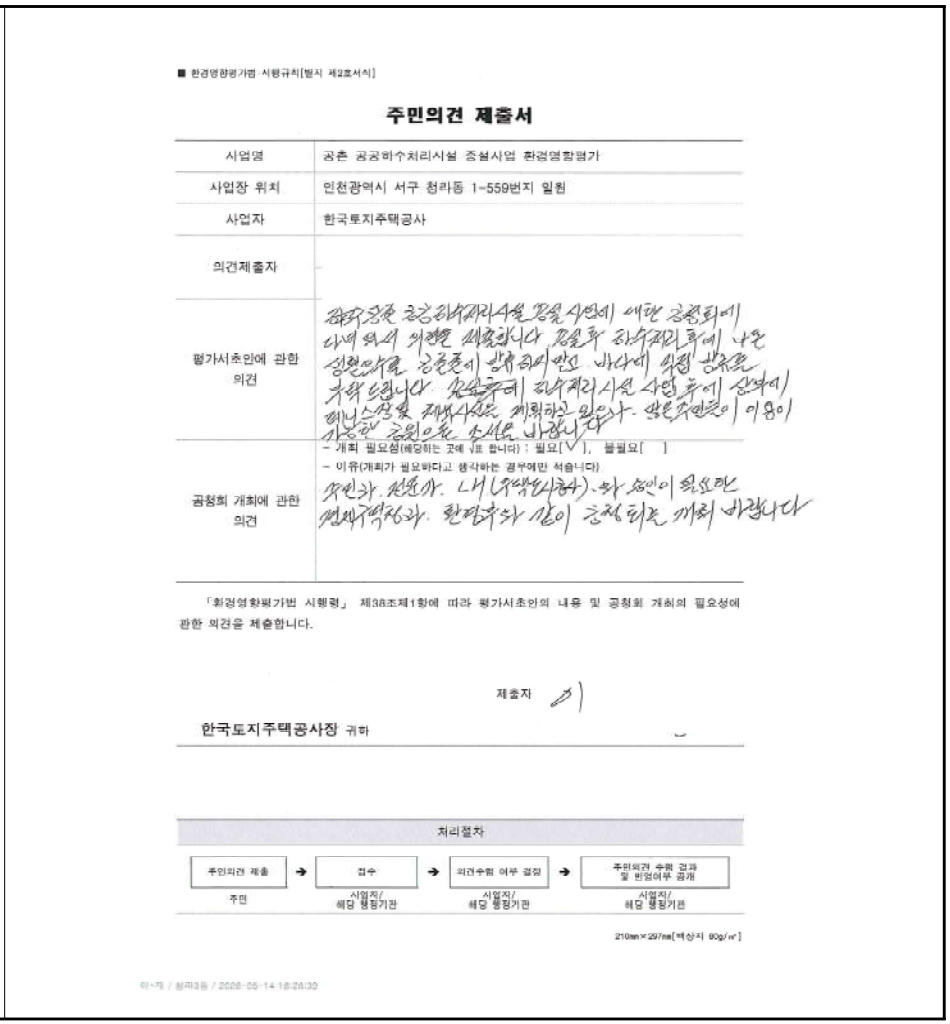
제출자)

한국토지주택공사장 귀하

처리절차

주민의견 제출 (주민) → 접수 (사업자/해당 행정기관) → 의견수렴 여부 결정 (사업자/해당 행정기관) → 주민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사업자/해당 행정기관)

210mm×297mm[백상지 80g/㎡]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주민의견 제출서

사업명	공촌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환경영향평가
사업장 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1-559번지 일원
사업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의견제출자	
평가서초안에 관한 의견	공촌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에 대한 공청회에 다녀 와서 의견을 제출합니다. 공설과 하수처리후에 나온 방류수로 공촌천이 방류하여 인천 바다에 유입 됩니다. 그런데 하수처리시설 사업 후에 악취에 의한 스트레스 재산상의 피해와 우수 방류로 인한 수질 오염으로 주민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답변은 나왔나요?
공청회 개최에 관한 의견	- 개최 필요성(해당하는 곳에 √표 합니다) : 필요[√], 불필요[ ] - 이유(개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주민과 전문가 LH(주택공사)와 의견이 틀리므로 객관적자료와 환경측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 바랍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라 평가서초안의 내용 및 공청회 개최의 필요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제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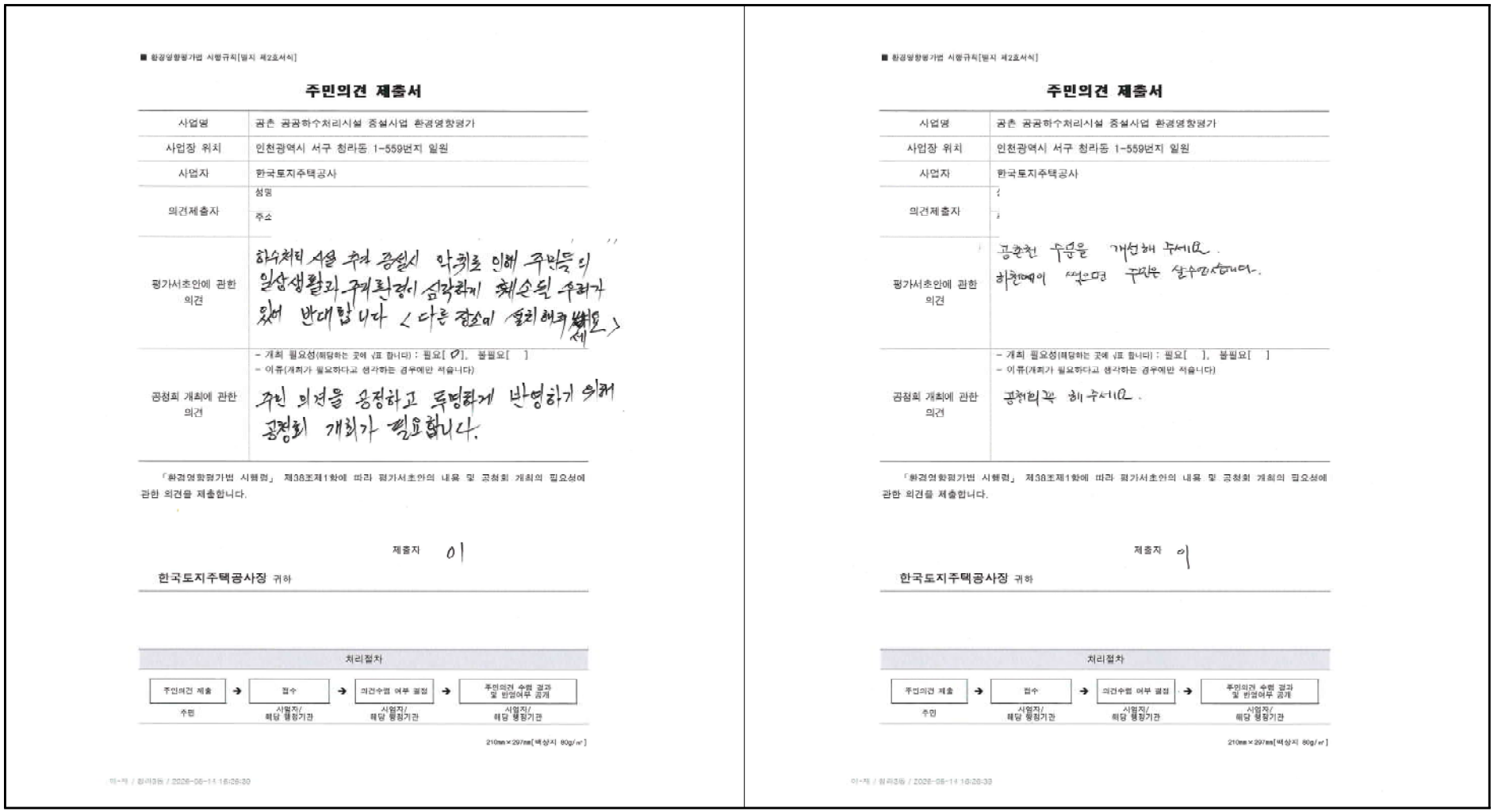
한국토지주택공사장 귀하

처리절차

주민의견 제출 (주민) → 접수 (사업자/해당 행정기관) → 의견수렴 여부 결정 (사업자/해당 행정기관) → 주민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사업자/해당 행정기관)

210mm×297mm[백상지 80g/㎡]

(그림 계속)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주민의견 제출서

사업명	공촌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환경영향평가
사업장 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1-559번지 일원
사업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의견제출자	성명 주소
평가서초안에 관한 의견	하수처리시설 추가 증설시 악취로 인해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주거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어 반대합니다 <다른 장소에 설치해주세요>
공청회 개최에 관한 의견	- 개최 필요성(해당하는 곳에 √표 합니다) : 필요[○], 불필요[ ] - 이유(개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주민 의견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반영하기 위해 공청회 개최가 필요합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라 평가서초안의 내용 및 공청회 개최의 필요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제출자 이

한국토지주택공사장 귀하

처리절차

주민의견 제출 (주민) → 접수 (사업자/해당 행정기관) → 의견수렴 여부 결정 (사업자/해당 행정기관) → 주민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사업자/해당 행정기관)

210mm×297mm[백상지 80g/㎡]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주민의견 제출서

사업명	공촌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환경영향평가
사업장 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1-559번지 일원
사업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의견제출자	[illegible]
평가서초안에 관한 의견	공촌천 수질을 개선해 주세요. 하천에이 썩으면 주민은 살수없습니다.
공청회 개최에 관한 의견	- 개최 필요성(해당하는 곳에 √표 합니다) : 필요[ ], 불필요[ ] - 이유(개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공청회꼭 해주세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라 평가서초안의 내용 및 공청회 개최의 필요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제출자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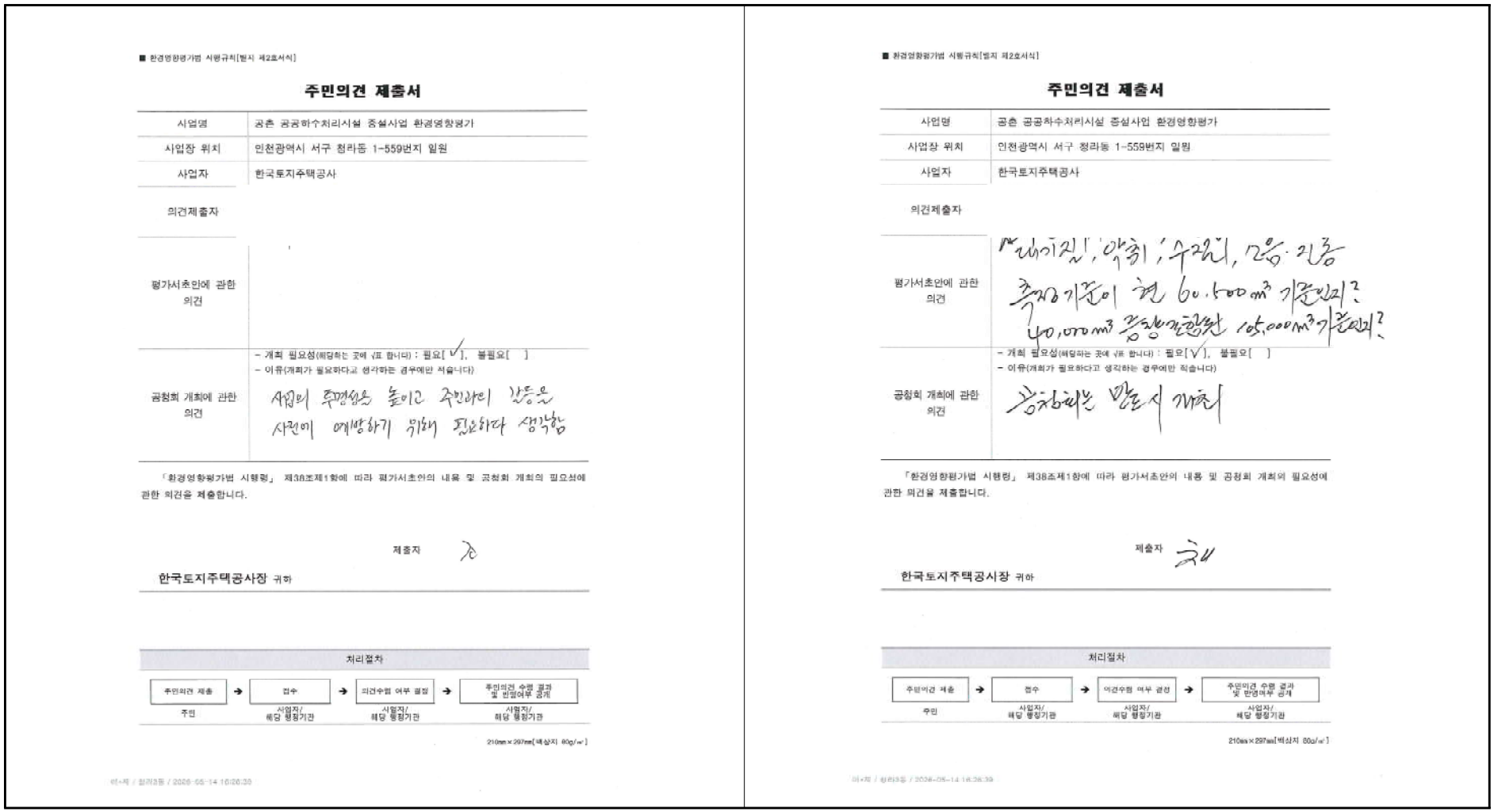
한국토지주택공사장 귀하

처리절차

주민의견 제출 (주민) → 접수 (사업자/해당 행정기관) → 의견수렴 여부 결정 (사업자/해당 행정기관) → 주민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사업자/해당 행정기관)

210mm×297mm[백상지 80g/㎡]

(그림 계속)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주민의견 제출서

사업명	공촌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환경영향평가
사업장 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1-559번지 일원
사업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의견제출자	
평가서초안에 관한 의견	
공청회 개최에 관한 의견	- 개최 필요성(해당하는 곳에 √표 합니다) : 필요[√], 불필요[ ] - 이유(개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사업의 주민영향을 줄이고 주민마찰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필요하다 생각함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라 평가서초안의 내용 및 공청회 개최의 필요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제출자 [illegible]

한국토지주택공사장 귀하

처리절차

주민의견 제출	→	접수	→	의견수렴 여부 결정	→	주민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주민		사업자/해당 행정기관		사업자/해당 행정기관		사업자/해당 행정기관

210mm×297mm[백상지 80g/㎡]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주민의견 제출서

사업명	공촌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환경영향평가
사업장 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1-559번지 일원
사업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의견제출자	
평가서초안에 관한 의견	"대기질", 악취 ; 수질, 진동·진동 측정기준이 현 60,000㎥ 기준인데? 40,000㎥ 공청개최한 105,000㎥ 기준인데?
공청회 개최에 관한 의견	- 개최 필요성(해당하는 곳에 √표 합니다) : 필요[√], 불필요[ ] - 이유(개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공청회는 반드시 개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라 평가서초안의 내용 및 공청회 개최의 필요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제출자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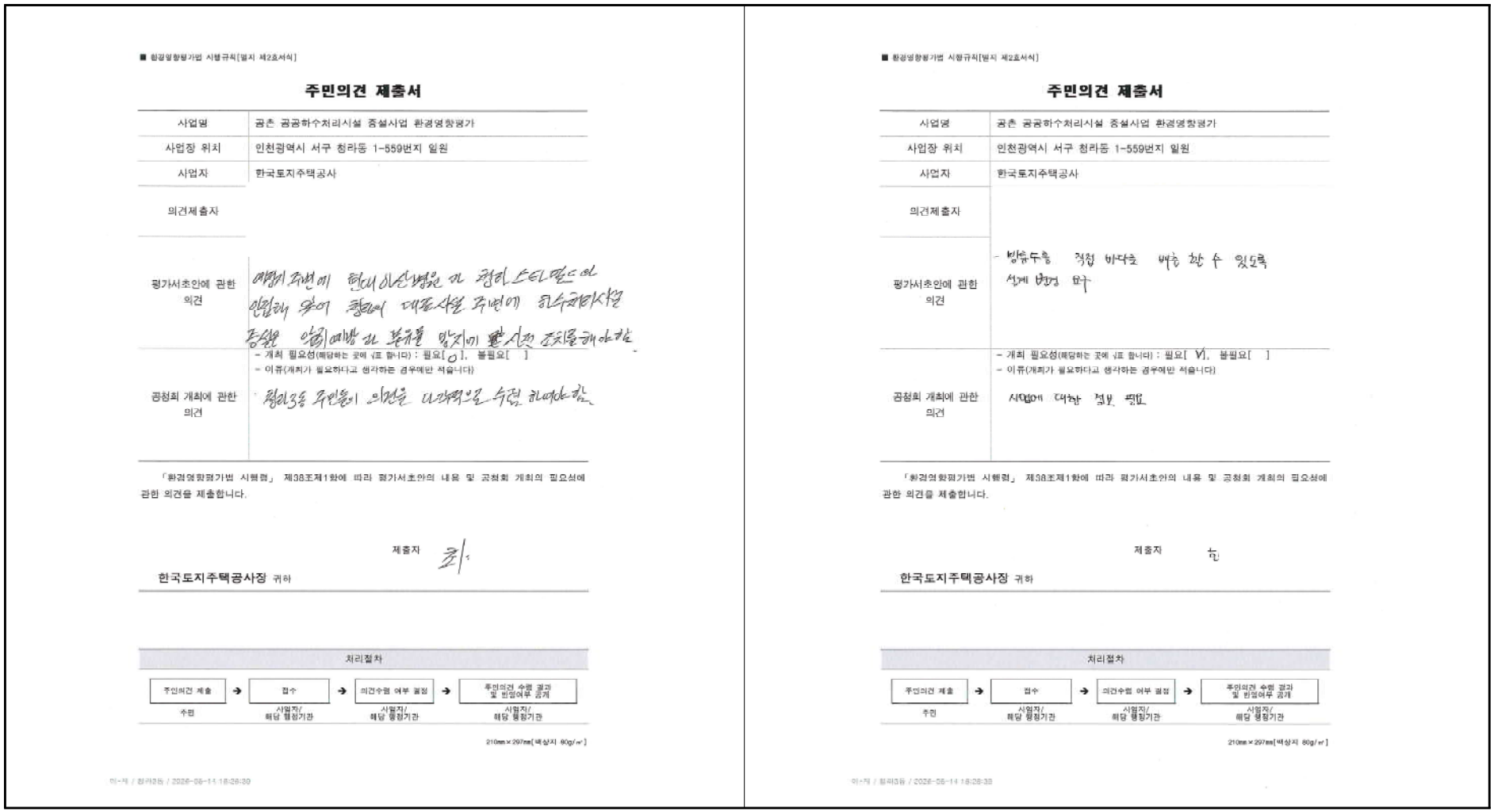
한국토지주택공사장 귀하

처리절차

주민의견 제출	→	접수	→	의견수렴 여부 결정	→	주민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주민		사업자/해당 행정기관		사업자/해당 행정기관		사업자/해당 행정기관

210mm×297mm[백상지 80g/㎡]

(그림 계속)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주민의견 제출서

사업명	공촌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환경영향평가
사업장 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1-559번지 일원
사업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의견제출자	
평가서초안에 관한 의견	예정지 주변에 현대아산병원과 청라 스타필드와 인접해 있어 향후 대중사용 주변에 교수체류시설 증설은 안전예방 및 불편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함
공청회 개최에 관한 의견	- 개최 필요성(해당하는 곳에 √표 합니다) : 필요[○], 불필요[ ] - 이유(개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청라3동 주민들의 의견을 다각적으로 수렴 하여야 함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라 평가서초안의 내용 및 공청회 개최의 필요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제출자 최

한국토지주택공사장 귀하

처리절차

주민의견 제출	→	접수	→	의견수렴 여부 결정	→	주민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주민		사업자/해당 행정기관		사업자/해당 행정기관		사업자/해당 행정기관

210mm×297mm[백상지 80g/㎡]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주민의견 제출서

사업명	공촌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환경영향평가
사업장 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1-559번지 일원
사업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의견제출자	
평가서초안에 관한 의견	- 방음두꺼 적정 바닥로 배출 할 수 있도록 설계 반영 요구
공청회 개최에 관한 의견	- 개최 필요성(해당하는 곳에 √표 합니다) : 필요[V], 불필요[ ] - 이유(개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사업에 대한 설명 필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라 평가서초안의 내용 및 공청회 개최의 필요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제출자 [illegible]

한국토지주택공사장 귀하

처리절차

주민의견 제출	→	접수	→	의견수렴 여부 결정	→	주민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주민		사업자/해당 행정기관		사업자/해당 행정기관		사업자/해당 행정기관

210mm×297mm[백상지 80g/㎡]

(그림 계속)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주민의견 제출서

사업명	공촌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환경영향평가
사업장 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1-559번지 일원
사업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의견제출자	성명 주소
평가서초안에 관한 의견	
공청회 개최에 관한 의견	- 개최 필요성(해당하는 곳에 √표 합니다) : 필요( ), 불필요( ) - 이유(개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라 평가서초안의 내용 및 공청회 개최의 필요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제출자 (서명)

한국토지주택공사장 귀하

처리절차

주민의견 제출 (주민) → 접수 (사업자/해당 행정기관) → 의견수렴 여부 결정 (사업자/해당 행정기관) → 주민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사업자/해당 행정기관)

210mm×297mm[백상지 80g/㎡]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주민의견 제출서

사업명	공촌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환경영향평가
사업장 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1-559번지 일원
사업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의견제출자	
평가서초안에 관한 의견	· 대기, 수질, 소음 등 환경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 · 환경영향 평가의 투명성 확보 및 주민 참여 보장 요.
공청회 개최에 관한 의견	- 개최 필요성(해당하는 곳에 √표 합니다) : 필요[√], 불필요[ ] - 이유(개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공공시설은 주민의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하며 지역주민의 환경권과 생활권 보호가 최우선으로고려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라 평가서초안의 내용 및 공청회 개최의 필요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제출자 (서명)

한국토지주택공사장 귀하

처리절차

주민의견 제출 (주민) → 접수 (사업자/해당 행정기관) → 의견수렴 여부 결정 (사업자/해당 행정기관) → 주민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사업자/해당 행정기관)

210mm×297mm[백상지 80g/㎡]

2.3 공청회 개최 여부 검토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결과「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요건에 해당됨

- 공청회개최 요건

• 공청회 개최요구 의견제출 주민 30명 이상

• **공청회 개최요구 의견제출 주민 5명 이상 + 초안에 대한 의견제출 주민 총 수의 50%이상**

<표 2-8> 주민의견 제출 및 공청회 개최여부

구 분	의견제출(인)	공청회 요구(인)	비 고
인천광역시 서해구	21	20	

2.4 공청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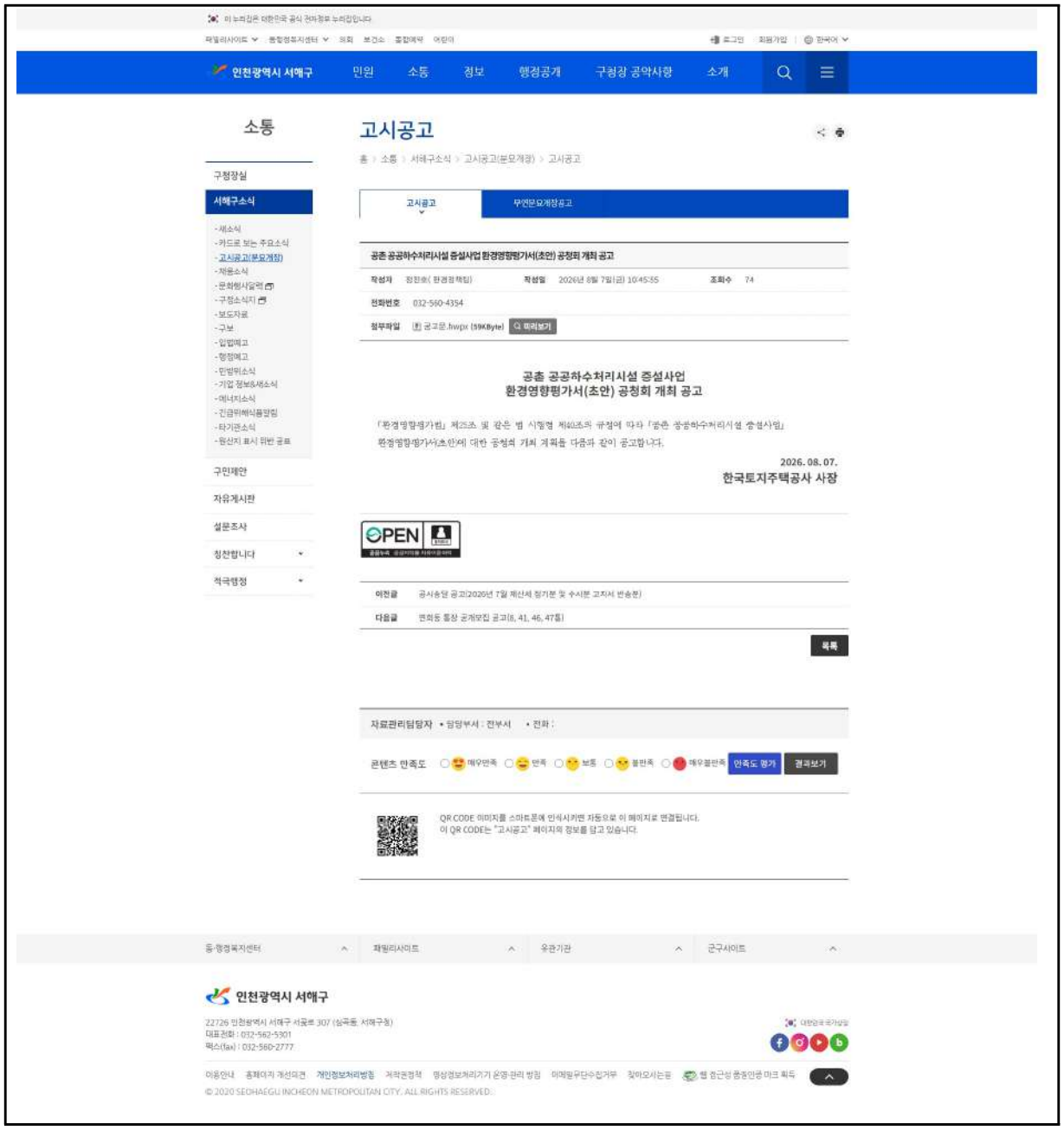
가. 공청회 개최 개요

(1) 공청회 개최 공고

구 분	내 용	비 고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정보통신망 게시	- 서해구 홈페이지 (공고일 2026년 08월 07일)	
신문공고	- 아시아투데이(일간신문), 인천일보(지역신문) (게시일 2026년 08월 07일)	
주 재 자	- 협성대학교 이상문 교수	

(2) 공청회 개최일시

대 상 지 역	일 시	장 소	비 고
서해구	2026년 08월 25일(화) 14:00	인천광역시 청라3동 행정복지센터	



<그림 2-9> 서해구 홈페이지 공고내용

◦ 신문공고(일간신문)



8 WORLD 2026년 8월 7일(음력 6월25일) 금요일 아시아투데이

새 국면 맞은 '호르무즈' 이란 "오만과 항로 합의"

이란 외무부 "공동성명 최종조율"
상선 통항로 윤곽… 통제권 변수
美·해운업계 강제 통행료에 반대

[워싱턴=하문주 특파원] 이란과 오만이 5일(현지시간)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관문인 호르무즈 해협의 상선 통항로 최초 설정에 합의하고 공동성명 발표를 위한 최종 조율에 들어가면서 장기간 이어진 해상 물류 불안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48시간 이내에 합계 될 것"이라며 협상 타결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이란은 이번 합의가 해협에 전면 재개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특히 미국의 대(對)이란 해상 봉쇄가 시속되는 한 안전한 통항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선박 통제 범위와 통행 수수료 부과 문제를 둘러싼 이견이 여전히 남아 있어 최종 타결 여부에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이란 "안전 보장 어려워"…트럼프 "48시간 내 결론"

에스마일 바기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이란과 오만이 항로의 자유적 공표에 합의했으며 주요 합의점을 담은 공동성명은 검토·작성의 최종 단계라고 밝혔다고 이란 국영 IRNA통신이 전했다.

바기이 대변인은 양국이 지난 두 달 동안 안전한 상선 통항로를 협의했고, 이란 관계 기관이 기술·법률·안보·환경 문제를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미국의 해상 봉쇄와 이란을 겨냥한 위협이 계속되는 만큼 양국 합의만으로 선박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특정 제3자가 명확하지 않는 다만" 합의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도 조기 타결 가능성을 언급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녹화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호르무즈 해협이 곧 열릴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이란은 매우 강력한 공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같은 날 폴 스엔젤레스에서 기자들에게 "48시간 이내에 합계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오만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협상에 미국이 관여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조만간 합의가 이루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키얼 가리베바디 이란 외무차관은 이날 "최근 미국과 어떠한 협상도 진행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 입시항로 윤곽…이란 통제권 범위 축각

외신이 전한 초안은 페르시아만 진입 선박이 이란 해안 인근 항로를 이용하고 출입 선박은 오만 인근 항로를 이용하는 구조다. 이란은 이를 통해 페르시아만 진입 선박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로이터통신이 전했다.

반면 가리바바디 차관은 전일 출항 선박 모두 입부 구간에서 이란 영해를 지나도록 설계됐다며 이번 합의가 지난 60년과 다른 새로운 운항 체계로 완전한 재개통은 아니라고 강조했다고 IRNA가 보도했다.

임시항로의 운용 기간도 출처별로 다르게 제시됐다. WSJ는 초안의 유효기간을 60일로 전했다. 가리바바디 차관은 항로가 2~4개월 동안 운영될 수 있다고 밝혔다. 협상 내용을 보고받은 지역 관리 2명은 양국 협상단이 초안을 마무리하고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모즈타바 하메네이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고 AP통신이 전했다.

◇ 통제권·수수료 놓고 대립…해운업계, 통행료 반대

가장 큰 쟁점은 이란의 통제 범위와 선박 비용이다. 이란은 화물 가격의 5~7%를 요구하고 오만은 약 3%를 논의하고 있다고 이란 고위 소식통이 말했다고 로이터가 전했다.

미국은 이란이 선박 통행을 승인하거나 외무 비용을 부과하는 방안에 반대하고 있다. 로이터는 초안 선택에 대한 이란의 권한이 인정되면 전쟁 이후 역내 힘의 균형이 이란에 유리하게 이동하는 중대한 양보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해운업계는 명칭과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비용에 반대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국제해운회의소(ICS)·발틱국제해운협의회(BIMCO)·세계해운협의회(WSC) 등 3개 해운단체는 유엔과 국제해사기구(IMO)에 의무 통행료를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호르무즈 해협의 비용 부과가 다른 해상 요충지로 확산돼 국제 해운과 교역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오만도 IMO에 의무 통행료 반대 입장을 전달했지만, 안전·보안·환경 서비스를 위한 지발적 분담금에는 열린 태도를 보였다. /hugo@

일본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에서 6일(현지시간) 열린 '원자폭탄 시골자 위령식·평화기념식'에서 약생들이 영령들을 추모하며 꽃을 바치고 있다. /AFP 연합

다카이치, 안보문서 개정 때 재검토 여부 주목

아시아 이슈

[도쿄=최윤제 특파원]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사진)가 6일 발언 비핵 3원칙에 관한 표현은 과거 총리들과 마찬가지로 답했다. 1994년 이후 평화기념식에 참석한 역대 총리 대부분은 비핵 3원칙을 앞으로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 정권 당시 총리들은 "비핵 3원칙을 견지해 나갈 것을 명세했다"고까지 말했다.

이에 선조 전 총리는 2015년 히로시마 연설에서 비핵 3원칙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당시 총리 수석은 설무진의 실수라고 해명했다. 이에 전 총리는 곧이어 열린 피폭자 대표 면담과 사죄 뒤 다카사키 평화기념식에서는 비핵 3원칙을 지키겠다는 뜻을 밝혔다.

반면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건지하고 있다"고만 말해 향후 유지 방침은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마이니치신문은 다카이치 총리가 현상만 설명하고 미래를 약속하지 않았다며, 연말 개정을 추진 중인 국가안보전략 등 안보 관련 3개 문서에서 비핵 3원칙을 재검토할 여지를 남긴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핵군축 방안으로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의 유지와 강화를 내세웠다. 일본이 제시한 '히로시마 행동계획'에 따라 현실적인 실천적인 핵군축을 추진하고, 고령화한 피폭자에 대한 보건·의료·복지 지원과 원폭 증 인정 심사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sonuljoo@

日 대표 만화잡지 '소년점프' 100만부 붕괴

올해 4~6월 평균 발행부수 98만부
온라인 서비스 확산에 출판계 침체

일본 주간 소년점프

[도쿄=최윤제 특파원] '드래곤볼'과 '슬램덩크'를 앞세워 한때 한 주에 약 653만부를 찍었던 일본 대표 만화잡지 '주간소년점프'의 발행부수가 처음으로 100만부 아래로 떨어졌다. 일본에서 100만부 이상 발행되는 종이잡지가 한 종도 남지 않으면서, 출판대국 일본을 상징했던 '밀리언셀러 잡지' 시대도 막을 내렸다.

6일 오미우라신문에 따르면 슈에이샤가 발행하는 주간소년점프의 올해 4~6월 평균 인쇄증명 발행부수는 약 98만5000부였다. 인쇄소가 실제 인쇄량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통계가 공개되기 시작한 2008년 이후 처음으로 100만부 선이 무너졌다.

1968년 창간된 주간소년점프는 일본 만화 산업의 전성기를 이끈 잡지다. '드래곤볼'과 '슬램덩크'가 함께 연재되던 1994년 12월에는 한 호 발행부수가 약 653만부에 달해 일본 만화잡지 사상 최고 기록을 세웠다. 당시 일본 국민 20명 가운데 1명이 산 셈이다.

그러나 인터넷과 스마트폰 만화 서비스가 확산하면서 발행부수는 가파르게 줄었다. 2017년 200만부 아래로 내려간 데 이어 약 6년 만에 다시 100만부 벽까지 무너졌다. 경쟁 잡지의 사정은 더욱 심각하다. 고단샤의 '주간소년매거진'은 약 260만1000부, 쇼가쿠칸의 '주간소년선데이'는 약 12만부에 그쳤다. 만화잡지가 아닌 시사주간지 '주간문슌'두 약 56만2000부, 아사히신문 출판의 '주간아사히'는 약 10만부 수준이다.

일본 주간 소년점프

다만 종이잡지 전체 시장도 정점기의 4분의 1 이하로 쪼그라들었다. 일본출판과학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종이잡지 추정 판매액은 전년보다 약 10% 감소한 약 3708억엔(약 3조3330억원)이었다. 시장이 가장 컸던 1997년 약 1조5644억엔과 비교하면 28년 만에 약 76%가 사라졌다.

출판계에서는 소년점프의 100만부 붕괴를 단순히 잡지 한 종의 부진으로 보지 않는다. 대신 종이잡지의 초소가 계속되면서 매출분 아니라 독자들이 새로운 작품을 접하는 통로까지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sonuljoo@

공촌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청회 개최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공촌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8. 07.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1. 사업의 개요
○ 사 업 명 : 공촌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원하동 1-55번지 일원
○ 사업면적 : 111,035.2㎡(기존 77,860.2㎡, 증설 33,175㎡)
○ 사업내용 : 시설증설(전체용량 105,000㎥/일 (기존 65,000㎥/일, 증설 40,000㎥/일))
○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2. 공청회 개최일시 및 장소·시간
○ 개최일시 : 2026년 08월 25일(화) 14시
○ 개최장소 : 청라도서관 웹설계실내부
3. 의견 진술자 추천
○ 추천대상 :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주민
○ 제출방법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 서식에 따른 의견진술자 추천서를 서해구청 환경관제팀에 제출
○ 제출기한 : 공청회 개최 예정일 7일 전까지(2026년 08월 18일까지)
○ 발표내용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3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사업과 관련된 환경보전방안에 관한 의견 발표
4.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기반처(☎ 055-922-372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냉소자의
달콤한 상상

못마땅한 현실을 끄집어내는
발칙한 소설적 상상력
상상이 새로운 현실이 되길 바라며
깃발을 든다!

뒤집어야 비로소 보이는 답답한 세상의 속살
"내 상상은 글이 된다!"

냉소자의 달콤한 상상

네이북스

<그림 2-10> 신문공고(아시아투데이)

◦ 신문공고(지역신문)



인천일보 제10538호 오피니언 2026년 8월 7일 금요일 15

기고

조봉암, 한국 민주주의가 너무 일찍 잃어버린 미래

조희연
전 서울특별시교육감

지난 7월31일 명우예사문화원에서 죽산 조봉암 선생의 67주기 추모식이 있었다. 선생이 '간첩' 혐의로 이승만 정부하에서 억울하게 사형을 당한 후, 선생의 명예회복을 위한 지난한 투쟁 끝은 노력이 이어졌다. 그노력은 4·19혁명 이후 시작되었으나 군사독재 아래 좌절되었다가, 87년 민주화 이후 다시 이어져 이제 우리는 선생을 과거의 희생자가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앞서 살았던 정치인으로 기억할 수 있게 되었다.

나는 50년대 선생을 죽인 것은 한 사람을 제거한 사건이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한국 정치가 걸어갈 수도 있었던 또 하나의 길을 끊어버린 사건이었다. 그로써 민주주의의 가능성 하나가 사라졌고, 공화의 가능성 하나가 지워졌으며, 진보와 보수가 공존하며 경쟁할 수 있는 정치의 가능성 또한 협에 삭제되었다. 그 결과 우리는 너무 오랜 시간 우회해야 했다.

'정치의 내전화', 그 공통체적 위기 앞에서

선생에게서 새로운 한국민주주의의 두 가지 미래를 발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선생이 추구했던 서로 다른 생각과 가치가 공존하는, 더 진보적이면서도 더 포용적인 민주주의를 재발견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적을 만들어 승리하는 체제가 아니라, 서로 다른 시민들이 함께 살아가는 질서를 만드는 일이다. 민주주의는 확일성이 아니라 다양성을 품는 원이며, 배제가 아니라 포용의 기술이다. 민주화운동과 그 클라이맥스였던 87년 6월 민주항쟁은 준내전적 갈등의 소용돌이에 빠져 있었던 대한민국에 민주주의 정치를 복원했던 시간이다. 즉 '내전(內戰)의 정치화'를 만들어낸 국민적 투쟁이었다. 그로부터 40여년에 이르는 지금, 우리는 '정치의 내전화' 위기를 맞고 있다. 정치가 가족을 갈라놓고, 친구를 갈라놓고, 시민을 서로 적으로 만들고 있다. 정치가 공동체를 지탱하는 힘이 아니라 공동체를 해체하는 힘으로 작동하는 순간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 이는 전지구적 현상이기도 하다.

농지개혁: 사회경제적 개혁을 뜻는 민주주의의 상상력

둘째, 자유를 버리지 않으면서도 경등을 포기하지 않는 길, 민주주의 안에서 최대치의 사회경제적 개혁을 실현하는 길을 선생에게서 재발견해야 한다. 그가 추동한 농지개혁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가 출발점에서 보여준 가장 위대한 정치적 상상력이었다. 선생의 상상력은 당대의 자본주의와 후에 전체주의로 귀결되어 몇배의 깊을 걸은 소련식 공산주의라는 두 극단을 모두 넘어서는 것이었다. 당시 농지개혁은 시혁경제적 경등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민주주의 안으로 끌어안음으로써 대한민국의 토대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었고, 그로써 이후의 비약적인 경제발전의 공동체적 토대를 만든 대전환적 사건이었다. 대한민국은 사회경제적 개혁을 끝없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다. 민주주의는 분등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강해질수 있었다.

오늘 우리는 또 다른 시대를 살고 있다. 또지의 불평등은 자산의 불평등으로, 소자농의 고통은 청년세대의 절망으로 모습을 바꾸었다. 주거의 불안, 노동의 불안, 교육과 기회의 격차, 극심한 자산 양극화는 민주주의의 지속 가능성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민주주의를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더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는 일이다. 그시대의 농지개혁이 민주주의가 시혁민주주의적 개혁을 포용했던 역사적 심함이었다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시대의 '제2의 농지개혁'이 될 것이다. 몸론 그것은 토지를 다시 나누는 일이 아니다. 청년에게 미래를 돌려주고,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완화하며,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사회경제적 대개혁이 될 것이다.

[사설]

폭염도 재난, 인천형 맞춤 방어선 구축해야

인천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됐다. 18년 만의 최상위 경고다. 연일 체감온도가 40도에 육박하는 가마솥더위가 맹위를 떨치면서 프로야구 경기가 이틀 연속 취소되는 초유의 사태마저 빚어졌다. 무엇보다 빠아른 것은 속출하는 인명 피해다. 계양구에서 열사병으로 첫 온열질환 사망자가 발생했고, 지역 누에 환자는 110명을 넘어섰다. 폭염은 더이상 일시적 기상이변이 아니다. 시민 생명과 직결된 치명적인 '재난'으로 완전히 굳어졌다.

재난급 폭염은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을 공격한다. 요금 폭탄이 두려워 찜통 같은 방에서 에어컨조차 켜지 못하는 독방촌 거주민과 홀몸노인 등에게 올여름은 가혹한 형벌과도 같다. 시장 상인들은 광기도 전에 부르는 재소를 보며 한숨짓고, 야시장 상인은 수십불 넘질을 마으려 얼음과 시루를 옆인다. 학약봉을 껜폼으로 견뎌야 하는 건설 현장 노동자의 하루는 목숨을 건 외줄 타기다. 기후 위기가 불평등을 가중시키는 슬픔한 현실이다.

인천시가 비상근무 체계를 2단계로 격상하고 쉼터 확대에 나섰으나 현재 처방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 중앙정부 지침에 의존하는 하행식, 단발성 대책으로는 일상화된 명위를 극복하기 어렵다. 인천은 항만과 공항, 해안가와 원도심, 도서지역을 모두 끌고 있는 복합 도시다. 각 군·구마다 주거 및 산업 특성, 피해 양상이 다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일률적인 대응을 넘어 시와 지자체가 주도권을 쥐고 지역 맞춤형 방어선을 세워야 한다. 일선 행정복지센터가 주민과 밀착해 사각지대를 살피는 현장 중심 행정이 절실하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도시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작업도 서둘러야 할 때다. 도심 내 녹지 공간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고 열섬 현상을 부추기는 회색빛 콘크리트 환경을 개선하는 등, 기후 적응형 도시계획을 시정 전반에 투영해야 한다. 행정당국은 "모든 역량을 현장에 집중하겠다"는 다짐이 헛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거듭되는 자연의 인증한 경고를 더 이상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 기후 위기 속에서 시민 생명과 안전을 굳건히 지켜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지방정부의 존재 이유이자 당면 과제다.

쌀물밀물

대학의 신화와 한국 대학의 미래

김천권
인천대학교 명예교수

한국 대학의 혁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학령인구는 감소하는데 대학 정원은 크게 줄지 않아 머지않아 상당수 대학이 존폐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나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은 아직 충분히지 않다. 그동안 대학은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사회발전에 기여했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역할과 운영 방식으로 변혁해야한다. 이러한 관점에서서 구 대학의 역사와 발전 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한국 대학의 앞날을 모색하는 데 시사점을 제공한다.

서구에서 대학은 약 1000년 동안 존속하며 끊임없이 진화해 온 독특한 조직이다. 교육과 연구를 넘어 의료·문화·스포츠 등으로 역할을 확대하며 지역발전을 이끌어 왔고, 일반 기업보다 훨씬 긴 생존력을 보여 왔다. 특히 노벨상 수상자의 상당수가 대학 연구자라는 사실은 대학이 지식 생산의 핵심 기관임을 보여준다.

대학의 지속성과 혁신의 원천은 독특한 조직 구조에 있다. 대학은 중세 유럽의 교사 길드에서 출발해 교수에게 높은 자율성을 보장하는 전통을 유지해 왔다. 동시에 거부금과 자산을 관리하는 독립적인 의사결정 구조와 행정 조직이 재정 기반을 담당하면서 교수 공동체의 자율성과 운영의 안정성이 결합한 지배구조를 형성했다. 이러한 구조는 우수 인재를 끌어들이고 새로운 지식과 조직 혁신을 가능하게 했다.

반면 높은 자율성은 강등도 수반했다. 교수와 행정조직, 정부, 기부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충돌은 대학에서 흔한 현상이다. 역사적으로도 대학은 자율성과 책임, 독립성과 재정 안정 사이의 균형을 모색하며 진화해 왔다. 자율성이 확대되면 혁신과 연구 경쟁력이 강화되는 반면 재정 확보와 외부 협력은 어려워질 수 있고, 반대로 자율성을 제한하면 운영 효율성은 높아지지만 창의성과 학문적 경쟁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 대학의 미래 역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직업교육은 단기 전문교육기관으로 이관되고, 온라인 교육 확산으로 기존의 4년제 학위 체계도 변화하고 있다. 앞으로 대학은 교육과 연구의 본질적 기능에 더해지 역사회의 새로운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한다.

한국 대학도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단순한 교육 기관을 넘어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연구개발의 거점이자, 주민의 평생학습과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플랫폼, 그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민주주의와 참여 활동을 구현하는 공공기관으로 전화해야 한다. 대학의 경쟁력은 지역사회와 동반 성장할 수 있는가에 의해 결정될 것이며, 이런 방향의 혁신이야말로 한국 대학이 살아남는 길이다.

"창조적 도전과 혁신으로 새로운 내일을 만들어 갑니다"

출판·인쇄
간행물(특수보안인쇄물)

교육사업
(전시, 미디어체험, 컨설팅)

행사 및 홍보
기획·대행

인천시 인중로 224
010.9085.4445
032.452.0141
IMP

전자증권 전환대상 주권 [illegible] 권리자 보호 안내

[illegible]

분할합병 및 주권제출공고

[illegible]

공촌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청회 개최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공촌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8. 07.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1. 사업의 개요
 ○ 사 업 명 : 공촌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1-559번지 일원
 ○ 사업면적 : 111,035.2㎡(기존 77,160.2㎡, 증설 33,875㎡)
 ○ 사업내용 : 시설용량(전체용량 105,000㎥/일 (기존 65,000㎥/일, 증설 40,000㎥/일))
 ○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2. 공청회 개최일시 및 장소·시간
 ○ 개최일시 : 2026년 08월 25일(화) 14시
 ○ 개최장소 : 청라3동 행정복지센터

3. 의견 제출자 주체
 ○ 주관대상 :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주민
 ○ 제출방법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2] 서식에 따른 의견진술자 주관서를서에구정 환경정책팀에 제출
 ○ 제출기한 : 공청회 개최 예정일 7일 전(주)2026년 08월 18일(화))
 ○ 발표내용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제11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사업과 관련된 환경보전방안에 한정하여 발표

4.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기반처(☎ 055-922-37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네이버TV, 카카오TV에서
인천일보TV 를 검색하세요

인천일보 인천일보TV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빠르게
인천일보가 종합미디어그룹으로 더 큰 도약을 시작합니다

ON AIR REC

<그림 2-11> 신문공고(인천일보)

(3) 공청회 개최 알림

<table>
<tr><td>
</td><td>
</td></tr>
<tr><td>청라3동 행정복지센터</td><td>청라2동 행정복지센터</td></tr>
<tr><td>
</td><td>
</td></tr>
<tr><td>오류왕길동(오류동) 행정복지센터</td><td>검암경서동(경서동) 행정복지센터</td></tr>
</ta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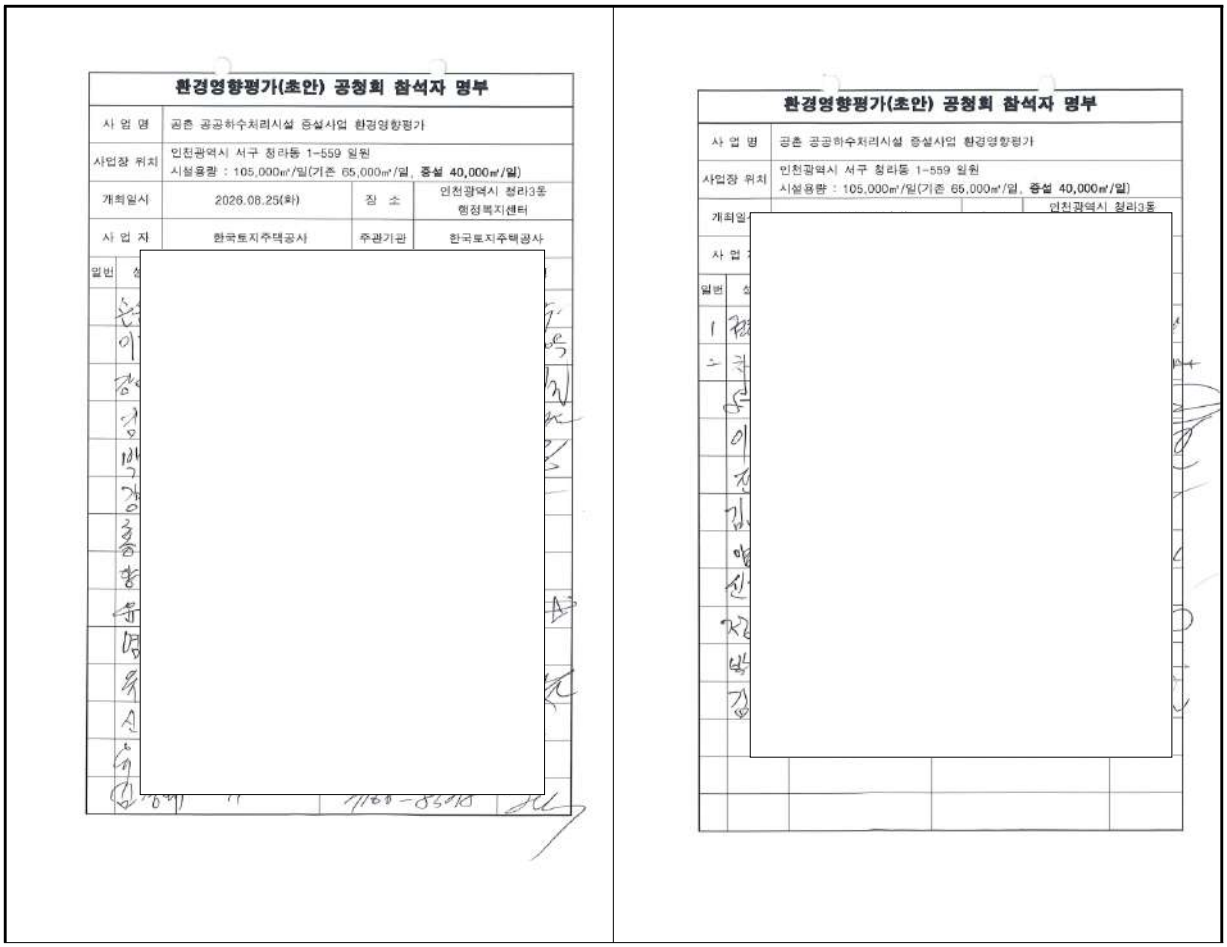
<그림 2-12> 공청회 개최 알림 현수막 사진

(4) 공청회 개최 결과

사업명	공촌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환경영향평가용역		
사업장 위치	인천광역시 서해구 청라동 1-559 일원		
행정기관 (사업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		
개최일시	2026년 08월 25일(화) 14:00		
개최장소	인천광역시 청라3동 행정복지센터(4층 대회의실)		
의 견 진 술 자			
구 분	성 명	소 속	비고
주재자	이 ○ 문	협성대학교	-
사업자 의견진술자	김 ○ 국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자
	전 ○ 구	(주)홍익기술단	평가대행사
	한 ○ 준	(주)건화	설계사
	이 ○ 규	금호건설(주)	시공사
주 민 의견진술자	주민요청으로 인하여 의견진술자 추천 없이 참석자 질의 형식으로 진행		
방청객 의견진술자	주민 25인		



<공청회 개최 사진>



환경영향평가(초안) 공청회 참석자 명부

사 업 명	공촌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환경영향평가		
사업장 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1-559 일원 시설용량 : 105,000㎥/일(기존 65,000㎥/일, 증설 40,000㎥/일)		
개최일시	2026.08.25(화)	장 소	인천광역시 청라3동 행정복지센터
사 업 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관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환경영향평가(초안) 공청회 참석자 명부

사 업 명	공촌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환경영향평가
사업장 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1-559 일원 시설용량 : 105,000㎥/일(기존 65,000㎥/일, 증설 40,000㎥/일)

<그림 2-13> 공청회 참석자 명부

살고 싶은 집과 도시로 국민의 희망을 가꾸는 기업

한 국 토 지 주 택 공 사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환경영향평가 등 초안 공청회 개최결과 통지(청라국제 공촌 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 우리공사 업무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청라국제 공촌 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결과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 40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송부드립니다.

붙 임 : 공청회 개최결과 통지서 1식. 끝.

한 국 토 지 주 택 공 사 사 장

수신자 인천광역시서해구청장(환경관리과장),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영종[illegible])

전결 09/01

과장 엄태현 팀장 강갑용

협조자

시행 도시기반처-6019 (2026.09.01.) 접수

우 52852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 http://www.lh.or.kr

전화 055-922-3729 전송 / theom@lh.or.kr / 비공개(5.7)

<그림 2-14> 공청회 개최결과 통지 공문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 2. 21.>

[√] 공청회
[ ] 온라인 공청회 **개최 결과 통지서**

사업명	공촌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환경영향평가 용역		
사업장 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1-559 일원		
사업자	한국토지주택공사		
공청회 또는 온라인 공청회 주재자			
개최일시	2026년 08월 25일(화) 14:00		
개최장소 (온라인 공청회의 경우에는 인터넷 주소)	인천광역시 청라3동 행정복지센터(4층 대회의실)		
참석인원	주민 25인		
의견진술 요지 및 사업자 의견 (의견진술자가 많은 경우 별지로 첨부)	의견진술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진술 요지	**별지 첨부**	
	사업자 의견		
	의견진술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진술 요지	**별지 첨부**	
	사업자 의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6조제5항 및 제40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6조의2,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공청회 또는 온라인 공청회 개최 결과를 알립니다.

2026 년 08 월 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서명 또는 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귀하

첨부서류	공청회 또는 온라인 공청회 참석자(주민이 추천하여 선정된 의견진술자를 포함합니다) 명단

처리절차

공청회 개최 요구	→	접수	→	공청회 또는 온라인 공청회 개최	→	공청회 또는 온라인 공청회 개최결과 통보
주민		사업자 또는 해당 행정기관		사업자 또는 해당 행정기관		사업자 또는 해당 행정기관

<그림 2-15> 공청회 개최결과 통지서

<그림 계속>

[별첨 1] 공청회 의견진술 요지

- 주민요청으로 인하여 의견진술자 추천 없이 방청객 질의 형식으로 진행

의견진술 요지 및 사업자 의견	의견진술자	-	-
		-	
	진술 요지	-	
	사업자 의견	-	

[별첨 2] 방청석 의견요지

방청객 의견진술 요지 및 사업자 의견	의견진술자	성명 : 주민 1	전화번호 : -
		주소 : 청라3동	
	진술 요지	▸공촌천의 상태를 육안 등으로 관찰 하였을 때, 하천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탁도, 악취 등이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됨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추가적으로 하수처리수가 방류되었을 때 하천이 더 악화될 것으로 판단됨 이에 수문개방 및 방류지점 변경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함	
	사업자 의견	▸하수처리수의 경우 현재 하천의 현황 수준보다 좋거나 비슷하게 방류기준을 설정하여 설계를 진행하였으며, 현황 및 설계자료를 통한 수질 모델링 진행시 일부 항목에서 현황 항목보다 좋아지는 것으로 예상됨 주민분께서 말씀하신대로 공촌천에서 발생되는 문제는 하수처리수의 문제보다는 하천의 순환의 문제라고 예상되며 ▸하천순환을 위하여 수문개방 등의 방법은 금회 사업범위 및 사업주체가 아니므로 수행이 어려움, 수문 및 하천관리주체인 인천광역시에 추가적으로 행정문의를 부탁드리는 바임	
	의견진술자	성명 : 주민 2	전화번호 : -
		주소 : 청라3동	
	진술 요지	▸하수처리장 지하화 후 상부부지에 계획되어 있는 테니스장을 주민 다수 의견인 파크골프장으로 변경요청	
	사업자 의견	▸하수처리장 상부 체육시설의 경우 추후 관리 주체인 인천광역시의 요구에 따라 결정하였음 ▸체육시설 변경은 설계 및 시공상 어려운 문제는 아니므로, 인천광역시의 의견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인천광역시에 문의 부탁드리는 바임	
	의견진술자	성명 : 주민 3	전화번호 : -
		주소 : 청라3동	
	진술 요지	▸설명자료에서 제시한 내용의 근거 및 정량적 평가자료를 제시바람	
	사업자 의견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의 경우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의 내용이며, 추후 환경영향평가서(본안) 작성 시 설명자료에서 제시한 내용 및 수질, 대기질, 악취 등의 환경보전방안 내용을 정량적이며 객관적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음	